

수퍼바이저가 지각한 상담 수퍼바이저의 윤리지침 이행

안 하 안 서 영 석* 박 성 화 이 정 윤 최 유 리
연세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수퍼바이저가 이행해야 할 윤리적 행동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우리나라 수퍼바이저들이 지각한 수퍼바이저의 윤리적 수행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국내외 상담 관련 학회의 최신 윤리규정 및 지침들을 분석한 결과, 19개의 수퍼바이저 윤리지침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들 범주에 따라 ‘수퍼바이저 윤리 수행 및 행동 질문지(Supervisor Ethical Practices and Behavior Questionnaire)’를 구성하여, 수퍼바이저 141명을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참여자들은 19개 윤리지침 중 평균 10.99개가 이행되었다고 보고하였고, 평균 5.74개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수퍼바이저 훈련, 역량 개발 및 지속적 교육’, ‘윤리적 행동에 대한 모델링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처’, ‘수퍼비전 비용에 대한 합의’의 이행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불이행비율은 ‘수퍼비전 및 수퍼바이저/수퍼바이저 역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연구윤리’, ‘수퍼비전과 상담의 구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외국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의 불이행비율이 외국의 경우보다 상당히 높았다. 수퍼비전 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사안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매우 민감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윤리지침이 이행되지 않은 결과에 초점을 맞춰 결과를 해석하고 우리나라 상담 수퍼비전에 대한 시사점과 제언을 논하였다.

주요어 : 상담 수퍼비전, 수퍼비전 윤리, 수퍼바이저 윤리지침, 수퍼바이저 윤리 수행 및 행동

† 교신저자 : 서영석, 연세대학교 교육학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Tel : 02-2123-6171, E-mail : seox0004@yonsei.ac.kr
제 3저자부터는 성명 ‘가나다’ 순.

수퍼바이저는 교육자, 자문가, 상담자, 평가자, 멘토 등 수퍼바이저를 대상으로 여러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수퍼바이저가 맡은 내담자의 복지 또한 책임지게 된다(Bernard & Goodyear, 2008).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가로서 수퍼바이저의 윤리적 수행은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윤리규정의 내용과 한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윤리적 행동의 본을 보이는 것은 수련 중인 상담자(수퍼바이저)가 윤리적인 상담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최해림, 2013; Barnett, Cornish, Goodyear, & Lichtenberg, 2007). 상담자들이 수퍼비전을 통해 상담 윤리 관련 내용을 학습하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 결과(우흥련, 허난설, 이지향, 장유진, 2015)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경우 수퍼바이저들은 수퍼비전을 통해 윤리적인 문제들을 인식하고 적절한 안내를 제공받는다. 더욱이, 수퍼비전에서 발생한 윤리적인 문제들은 상담과정에서도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수퍼바이저뿐 아니라 내담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Doehrman, 1976). 사실상 어느 시점에서는 수퍼바이저들도 수퍼바이저로서 활동하게 된다는 점(Bernard & Goodyear, 2008)을 고려해 보았을 때, 수퍼바이저가 윤리적 수행에 대한 역할 모델이 되는 것은 윤리적인 상담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과정에서의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상담현장에서는 수퍼비전 이론이나 모델, 윤리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채 수퍼비전을 수행하고 있는 수퍼바이저들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김명화, 홍혜영, 2017; 방기연, 2012; 손진희, 2004; 오효정, 최한나, 2015; 장세미, 장성숙, 2016; 지승희, 주영아, 김영혜, 2014; 최해림, 1999; 최해림, 김영혜, 2006). 본 연구에서는 수퍼비전 관련 윤

리규정 및 지침,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수퍼바이저가 이행해야할 윤리적 행동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우리나라 수퍼바이저들이 지각한 수퍼바이저의 윤리적 수행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리나라 상담 관련 학회에서는 수퍼비전과 관련하여 수련생 훈련 및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들을 윤리규정에 담아 이를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한국가족상담협회, 2014; 한국상담심리학회, 2009; 한국상담학회, 2016; 한국심리학회, 2016). 학회들은 ‘교육 및 수련’ 또는 ‘학생과 수련생’이라는 별도의 장을 마련하거나, 여러 섹션에서 부분적으로 수퍼바이저 교육이나 수련감독과 관련하여 준수해야할 사항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규정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수퍼비전을 실시할 때 수퍼바이저가 지키고 이행해야할 사항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수퍼비전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우에도, 제시된 표현이 매우 모호하여 어떻게 실천으로 옮겨야할지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들이 있을 뿐 아니라 수퍼비전의 다양한 주제 영역을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마련된 별도의 장 이외의 부분에서도 교육 및 수련감독에 대한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는 등 관련 규정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수퍼비전 관련 제반 사항들을 한 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윤리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활용하는 전문가들의 비율이 낮은 것(우흥련 등, 2015)은 규정의 구성이나 내용적 측면에서의 용이성과도 관련된다고 사료된다.

해외 학회의 경우, 윤리규정과 함께 수퍼비전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안 또는 권장사항이라 할 수 있는 윤리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심

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4, 2017)는 윤리규정 내 ‘교육과 훈련’ 장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사항 이외에, ‘심리 건강 서비스에서의 임상 슈퍼비전을 위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보다 상세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상담학회(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14)는 ‘수퍼비전, 훈련 및 교육’을 윤리규정의 한 섹션으로 명시하고 수퍼비전에 초점을 둔 상세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회 산하에 ‘상담자 교육 및 수퍼비전 협회(Association for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를 따로 두고 있는데, 이 협회에서는 ‘상담 슈퍼바이저를 위한 윤리지침’을 보다 자세히 제공하면서 이를 제정한 목적이 (1) 윤리적·법적으로 내담자와 슈퍼바이저의 권리를 보호하고, (2) 상담 훈련과 전문성 발달에 대한 슈퍼바이저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3)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방침, 절차,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Association for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1995).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상담 슈퍼비전과 관련된 여러 윤리적 사안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윤리규정이나 행동지침이 체계화되어있지 않아 관련 문제를 다루거나 적절한 대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방기연,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상담 관련 학회의 윤리규정 및 지침, 관련 문헌을 토대로 슈퍼바이저가 유념해야 할 내용을 추출, 목록화하고 슈퍼바이저의 윤리적 행동을 점검할 수 있는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이미 해외에서는 슈퍼바이저 윤리지침을 목록화하고, 이를 토대로 슈퍼바이저의 윤리적 수행 현황을 파악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Crall, 2011; Ladany, Lehrman-Waterman,

Molinaro, & Wolgast, 1999). Ladany와 그의 동료들(1999)은 여러 상담 관련 학회의 윤리규정 및 지침, 수퍼비전 관련 문헌을 검토한 후 이들 자료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슈퍼바이저 윤리지침들을 종합하여 예비목록을 작성하였다. 이후 적용 가능성 및 평가 용이성 등에 관해 여러 차례 논의와 수정을 거쳐 최종 15개의 슈퍼바이저 윤리지침 목록을 개발하였다. 이를 토대로, Ladany 등(1999)과 Crall(2011)의 연구에서는 슈퍼바이저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한 슈퍼바이저의 윤리적 수행을 조사했는데, 1999년에는 슈퍼바이저의 51%가, 2011년에는 33%가 자신의 슈퍼바이저는 제시된 15가지 윤리지침 중 한 가지 이상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Ladany 등(1999)의 연구에서는 성적 이슈, 심리치료/상담과 수퍼비전의 구별, 종결과 추수개입 이슈 지침들은 잘 지켜지는 반면, 슈퍼바이저 활동에 대한 수행 평가와 모니터링(33.1%), 수퍼비전에서의 비밀보장 문제(17.9%), 다양한 대안적 관점을 가지고 작업하는 능력(17.9%), 수퍼비전 회기와 슈퍼바이저 존중(12.6%) 지침은 지켜지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Crall(2011)의 연구에서는 10여 년 전에 비해 지켜지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슈퍼바이저 활동에 대한 수행 평가와 모니터링(18.6%), 수퍼비전 회기와 슈퍼바이저 존중(10.9%), 다양한 대안적 관점을 가지고 작업하는 능력(9.6%), 윤리적 행동에 대한 모델링과 윤리적 사안에 대응하기(9.6%)는 여전히 다른 지침에 비해 지켜지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수퍼바이저의 윤리적 수행은 슈퍼바이저-수퍼바이저 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수련받는 슈퍼바이저의 윤리적 수행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슈퍼바이저가 윤리지침을 따르지 않을수록 슈퍼비전 작업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슈퍼바이저가 자신의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에 대한 생각을 개방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ray, Ladany, Walker, & Ancis, 2001; Ladany et al., 1999). 또한 슈퍼바이저의 비윤리적 행동으로 인해 슈퍼바이저는 상담에 영향을 미친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슈퍼비전에서 말하지 않게 되고, 내담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조작하거나, 의도적으로 슈퍼바이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슈퍼바이저의 비윤리적인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Crall, 2011). 반면, 슈퍼바이저에게 긍정적·효과적으로 인식되는 슈퍼바이저의 행동은 슈퍼바이저가 지켜야 할 윤리지침과 그 내용이 맞닿아 있다. 예를 들어,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만족도 및 참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상담 수행에 대한 슈퍼바이저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강점 지지(Hepner & Roehlke, 1984)는 Ladany 등(1999)이 제시한 ‘슈퍼바이저 활동에 대한 수행 평가와 모니터링’ 지침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슈퍼비전에 대한 국내 연구는 2000년도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두경희, 김계현, 김동민, 2008). 즉, 슈퍼바이저의 입장에서 이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슈퍼비전 교육내용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기초 연구를 비롯하여(예, 김계현, 문수정, 2000; 송은화, 정남운, 2005; 신종임, 천성문, 이영순, 2004), 상담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의 긍정·부정적 경험을 탐색한 연구들도 꾸준히 수행되어왔다(예, 방기연, 2006; 유성경, 두경희, 김은하, 정여주, 2009; 이승은, 정남운, 2003; 조윤진, 이은진, 유성경, 2014; 지승희, 박정민, 임영선, 2005; 지승희

등, 2014; 최한나, 김창대, 2008; 홍영식, 한재희, 2012). 또한 최근에는 우리나라 슈퍼비전 교육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슈퍼바이저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예, 김명화, 홍혜영, 2017; 오효정, 최한나, 2015; 장세미, 장성숙, 2016; 전정운, 한재희, 2012), 슈퍼비전 방식 및 내용, 효과적인 슈퍼비전 요소, 슈퍼비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등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수행에 초점을 둔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예, 방기연, 2012; 소수연, 장석숙, 2011, 2014; 손진희, 2004; 이홍숙, 최한나, 2013).

지금까지 국내에서 슈퍼바이저의 ‘윤리적 수행’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방기연(2012)은 슈퍼바이저들을 대상으로 비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여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슈퍼비전에서의 윤리적 문제 상황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슈퍼바이저의 불성실한 지도 감독, 수련생에게 불충분한 슈퍼비전 제공, 부적절한 상담 사례 배정, 슈퍼바이저와 수련생 간의 인간적 갈등, 부적격한 수련생 선별 및 추천, 슈퍼바이저의 낮은 윤리적 민감성, 슈퍼바이저와 수련생의 이중관계를 슈퍼비전에서의 윤리적인 문제로 보고하였다. 방기연의 연구는 슈퍼바이저들의 윤리의식과 문제점을 슈퍼바이저의 입장에서 확인했다는 점과, 슈퍼비전 윤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연구자는 슈퍼비전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도록 참여자들에게 국내 윤리규정을 제시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 윤리규정에서는 슈퍼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윤리적 사안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

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연구에 참여한 7명의 슈퍼바이저들은 어렵פות이 알고 있거나 제한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슈퍼바이저의 문제 행동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슈퍼비전에서 당면하게 되는 윤리적인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슈퍼비전 윤리규정 및 지침, 관련 문헌들을 고찰해서 슈퍼바이저가 따라야 할 구체적인 윤리지침과 행동 목록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당사자인 슈퍼바이저들을 대면하여 인터뷰한 자료를 분석했다는 점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자 자신이 슈퍼바이저이기 때문에 슈퍼비전에서의 윤리적 문제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솔직하게 보고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따라서 슈퍼비전의 또 다른 경험 주체인 슈퍼바이저들을 대상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설문 또는 서면 기술 방식으로 슈퍼바이저들의 윤리적 행동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슈퍼바이저의 윤리적 태도와 수행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슈퍼바이저의 비윤리 문제를 확인하는 것 뿐 아니라, 슈퍼바이저가 따르고 이행해야 할 윤리적 행동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슈퍼바이저의 윤리적 수행 현황을 파악한 외국의 선행연구(Ladany et al., 1999)를 참고하고, 슈퍼비전과 관련된 최신의 국내외 윤리규정 및 지침들을 분석하여 슈퍼바이저가 이행해야 할 윤리적 행동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분류하였다. 그런 다음, 도출된 윤리지침 범주에 따라 ‘슈퍼바이저 윤리 수행 및 행동 질문지(Supervisor Ethical Practices and Behavior Questionnaire)’를 구성하였다. 이는 슈퍼바이저가 따라야 할 윤리적 행동을 상세화한 질문지로, 연구자들은 이

질문지를 사용하여 슈퍼바이저가 지각한 슈퍼바이저의 윤리적 수행 여부와 정도를 조사하고 해외의 연구결과(Crall, 2011; Ladany et al., 1999)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슈퍼바이저의 윤리적 행동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 목록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슈퍼바이저들의 윤리적 수행 정도를 파악하여 해외 슈퍼바이저들의 수행 현황과 비교해 봄으로써 향후 슈퍼비전 윤리 교육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가 준수해야 할 윤리적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나라 슈퍼바이저들은 그들의 슈퍼바이저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지각하는가?’, ‘우리나라 슈퍼바이저들이 지각한 슈퍼바이저의 윤리적 수행 정도는 해외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는가?’

슈퍼바이저 윤리지침 목록 구성

슈퍼바이저의 윤리지침 이행 현황 분석에 앞서,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가 준수해야 할 윤리적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최신의 국내외 윤리규정 및 지침들을 검토하여 슈퍼바이저가 지켜야 할 윤리적 행동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고 범주화하는 작업을 먼저 수행하였다.

방 법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Ladany와 동료들(1999)이 제시한 15개 슈퍼바이저 윤리지침을 시작목록(start list)으로 활용하였다.¹⁾ 한편, Ladany 등(1999)이 윤리지침 목록을 도출할 당시 근거로 삼았던 윤리규정 및 지침들은 대부분 90년대 초반에 공표된 것이고 미국의 자료들만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국내외 대표적인 상담 관련 학회의 최신 윤리규정 및 지침을 분석 자료로 수집하였다. 국외 자료로는 미국 결혼과 가족 협회 윤리규정(American Association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py, 2015), 미국상담학회 윤리규정(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14), 미국심리학회 윤리규정 및 슈퍼비전 지침(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4, 2017), 미국 상담자 교육과 슈퍼비전 협회의 슈퍼바이저 윤리지침(Association for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1995)을 사용하였다. 또한 국내 자료로는 한국가족상담협회 윤리규정(2014),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2009), 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2016), 한국심리학회 윤리규정(2016)을 분석 자료에 포함시켰다.

1) 시작목록(start list): (1) 슈퍼바이저 활동에 대한 수행 평가와 모니터링, (2) 슈퍼비전에서의 비밀 보장 문제, (3) 다양한 대안적 관점을 가지고 작업하는 능력, (4) 슈퍼비전 회기와 슈퍼바이저 존중, (5) 전문적 역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상담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6) 전문성/효능감 이슈, (7) 내담자가 알아야할 사항에 대한 고지, (8) 윤리적 행동에 대한 모델링과 윤리적 사안에 대응하기, (9) 위기 관리와 개입, (10) 내담자에 대한 다문화적 민감성, (11) 슈퍼바이저에 대한 다문화적 민감성, (12) 이중관계, (13) 종결과 추수개입 이슈, (14) 심리치료/상담과 슈퍼비전의 구별, (15) 성적 이슈.

연구팀

연구팀은 4명으로 구성된 분석팀과 1명의 감수자로 구성되었다. 분석팀은 모두 상담심리 전공자들로써 질적·양적 연구를 수행해본 경험이 있는 박사학위자(1명), 석사학위자(3명)로 이루어졌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31.75세($SD=3.50$, $range=30\sim37$)였고, 모두 여성이었다. 이들은 서울에 소재한 대학상담센터와 청소년상담기관에서 근무 중인 상담자들이었으며, 이들 중 3명은 상담심리사 2급, 1명은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상담경력은 평균 33.25개월($SD=29.59$)로 12개월에서 77개월까지 분포하였고, 개인수퍼비전을 받은 경험은 평균 27.50회($SD=15.61$)로 14회에서 50회까지 분포하였다. 감수자는 상담 및 슈퍼비전 경험이 풍부한 남성 상담교수로 CQR, 근거이론, 현상학적 연구 등 다수의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자료 분석 절차

연구자들은 수집한 윤리규정 및 지침들을 수차례 읽으면서, 슈퍼바이저가 이행해야할 윤리적 행동과 관련된 부분을 포착한 후, 발췌한 핵심문장 중 유사한 것끼리 범주화하여 윤리지침 목록을 구성하였다. 일련의 분석과정에서 연구자들은 분석한 자료가 다음의 4가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질문하며 합의에 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1) 슈퍼비전 윤리에 해당하는가, (2) 우리나라 슈퍼비전, 슈퍼바이저-수퍼바이저 관계에 적용 가능한가, (3) 슈퍼바이저가 평가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의 행동인가, (4) 어떤 유형의 슈퍼바이저 윤리 행동인가.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분

석팀 4인은 자신의 상담 경력 및 슈퍼비전 받은 경험에 관해 이야기 나누며 각자 슈퍼바이저의 윤리적 행동이 무엇이고 슈퍼비전 시 어떤 것들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논의하였다. 이때 슈퍼바이저의 윤리적 행동을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을 제공할 때 슈퍼바이저-슈퍼바이저 관계에서 보여야 할/지켜야 할 적절한/바람직한 행위의 실천’으로 정의하고 (Cottone & Tarvydas, 2003; Levy, 1974; Sperry, 2007), 시작목록을 함께 보며 제시된 15개 윤리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슈퍼바이저의 윤리적 행동에 대한 이해가 서로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런 다음, 분석팀은 최신의 미국상담학회(2014)와 미국심리학회(2017)의 윤리규정을 함께 읽으면서 슈퍼비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추출하였다. 한국상담심리학회(2009), 한국상담학회(2016), 한국심리학회(2016)의 최근 윤리규정 역시 연구자들이 함께 읽으면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였다. 나머지 국내외 윤리규정 및 지침들은 분배하여 슈퍼바이저가 지켜야 할 윤리적 행동과 관련된다 고 판단되는 내용을 각자 추출하였으며, 이후 다시 모여 발췌·요약한 내용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합의에 이를 때까지 논의하였다. 수집한 윤리규정 및 지침으로부터 핵심문장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 감수를 받았다.

다음으로, 연구자들은 유사한 핵심문장들을 모아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때, 시작목록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추출한 핵심문장이 15개 윤리지침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지침에 포함시키고, 15개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새로운 지침 코드를 부여하였다. 지침 코드가 같은 핵심문장들은 동일한 윤리지

침 범주로 분류하면서 분류된 핵심문장들을 포괄할 수 있는 범주 명칭을 합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이후 감수자가 핵심문장들이 각 지침 범주에 잘 분류되었는지, 범주 명칭이 적절하게 핵심문장들을 아우를 수 있는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연구자들은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다. 핵심문장들은 이처럼 윤리지침 범주로 분류하는 과정뿐 아니라 각 범주의 윤리지침 내용을 정제하거나 이후 하위 행동 문항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활용되었다.

결 과

국내외 윤리규정 및 지침들을 분석한 결과, 총 121개의 핵심문장이 추출되었고 이는 19개의 슈퍼바이저 윤리지침 범주로 분류되었다 (표 1 참조). 즉, 시작목록으로 삼았던 Ladany 등(1999)의 윤리지침 목록은 15개의 범주로 구성되었지만, 자료 분석 과정에서 기존의 한 범주가 두 개 범주로 세분화되었고(‘전문적 역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상담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 ‘슈퍼비전 및 슈퍼바이저/슈퍼바이저 역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슈퍼바이저 발달 모니터링’), 세 개의 새로운 범주가 생성되었다(‘슈퍼바이저 훈련, 역량 개발 및 지속적 교육’, ‘연구윤리’, ‘슈퍼비전 비용에 대한 합의’).

우선, ‘전문적 역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상담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의 경우 두 개의 범주로 세분되었다. 연구자들이 최근 국내외 윤리규정 및 지침들을 검토한 결과, 슈퍼바이저/슈퍼바이저 역할에 대한 명료화뿐 아니라 슈퍼비전 자체에 대한 사전 안내나 고지 또한

함께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퍼비전 및 수퍼바이저/수퍼바이지 역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나의 독립된 범주로 도출하였다(표 1, 12번 참조). 구체적으로 이 범주는 수퍼바이저가 자신과 수퍼바이지의 역할 및 의무를 명확히 할 뿐 아니라 수퍼바이저의 경력, 이론적 성향, 수퍼비전 목표 및 방침, 평가원칙, 수퍼바이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미리 알려주는 사전 동의 절차를 수행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세분화된 또 다른 범주는 ‘수퍼바이지 발달 모니터링’으로, 수퍼바이지가 상담전문가로서 성장하는데 적절하고 의미 있는 상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를 보장하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수퍼비전의 내용과 방식이 수퍼바이지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표 1, 16번 참조).

또한 시작목록에 없었던 범주들이 새롭게 도출되었다. 예를 들어, 연구자들이 검토한 모든 국내외 윤리규정 및 지침에서는 수퍼바이저가 수퍼바이지의 발달을 지원할 뿐 아니라, 수퍼바이저 또한 최신의 상담, 수퍼비전 관련 지식 및 기술들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전문 역량을 키울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이를 하나의 독립된 범주로 새롭게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수퍼바이저 훈련, 역량 개발 및 지속적 교육’, 표 1, 17번 참조).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내외 윤리규정 및 지침에서는 연구참여자에게 권위를 행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경우 지켜야할 연구윤리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었는데(한국가족상담협회, 2014; 한국상담학회, 2016; 한국심리학회, 2016; American Association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py, 2015;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14;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7; Association for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1995), 시작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였다. 연구자들은 수퍼바이저 또한 이러한 위치에 있고 실제 수퍼비전 관계에서도 연구와 관련된 윤리적 사안이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새로운 윤리지침 범주로 구분하였다(표 1, 18번 참조). 새롭게 도출된 ‘연구윤리’ 범주는 수퍼바이저가 수퍼바이지 또는 수퍼바이지의 내담자에게 연구참여를 요청할 경우, 연구참여 시 보장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참여 여부가 평가나 수퍼비전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몇몇 국내외 윤리규정에는 재정적 부담, 비용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다(한국가족상담협회, 2014; 한국상담심리학회, 2009; American Association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py, 2015;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7).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퍼바이저가 상담을 진행한 기관 내에서 수퍼비전을 제공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외부에서 수퍼비전을 받을 경우 수퍼바이저가 직접 수퍼비전 비용에 대한 부담을 져야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것이 수퍼비전에서 윤리적으로 민감하게 다뤄야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수퍼비전 비용, 지불방식 등을 사전에 논의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퍼비전 비용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수퍼비전 비용에 대한 합의’를 새로운 범주로 도출하였다(표 1, 19번 참조).

세분화되고 새롭게 도출된 윤리지침 범주 외에, 시작목록에 포함된 윤리지침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명칭을 가진 범주들을 언급

표 1. 슈퍼바이저 윤리지침 목록

	윤리지침 범주	윤리지침 내용	문헌 빈도	
			국외	국내
1.	수퍼바이저의 개인 특성에 대한 민감성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저의 ‘나이, 성별, 성 정체성/지향성, 결혼/동거, 출신지역,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정치적 신념, 인종/민족, 문화’와 관련된 문제를 적절하고 민감하게 다룬다.	4	2
2.	성 문제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저와의) 성적, 낭만적 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적절하게 다룬다.	5	3
3.	수퍼비전과 상담의 구별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과 상담을 적절히 구별하고, 필요할 경우 수퍼바이저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도록 권유한다.	5	4
4.	다양한 관점에 대한 수용	수퍼바이저가 제시하는 이론이나 상담 실체에 대한 정보는 최근 지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수퍼바이저 자신의 이론적 성향뿐 아니라 다양한 이론적 입장을 제시하여 수퍼바이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4	2
5.	전문성/유능성의 한계에 대한 인식	수퍼바이저는 자신 또는 수퍼바이저에게 특정 내담자나 상황, 특정 심리검사의 실시 및 해석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에 대해 적절히 개방한다. 수퍼바이저로 하여금 내담자 상담과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과 적절히 협력하게 한다.	5	4
6.	윤리적 행동에 대한 모델링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처	수퍼바이저는 윤리적 행동에 대해 의논하며 윤리적 행동의 모범이 된다.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저-수퍼바이저, 수퍼바이저-내담자 간 관계에서 발생한 윤리적 위반 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한다.	5	1
7.	수행평가 및 감독	수퍼비전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수퍼바이저의 상담수행을 평가하며, 수퍼바이저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6	4
8.	수퍼비전 및 수퍼바이저 존중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저와의 수퍼비전을 존중하고, 수퍼바이저를 존중해준다(예: 수퍼비전 시간약속, 수퍼바이저의 사생활 존중).	4	2
9.	수퍼비전에서의 비밀보장	수퍼바이저는 비밀보장에 관한 문제들을 적절하게 다룬다(예: 수퍼비전에서의 비밀보장 한계를 설명함, 수퍼비전 내용 개방에 대한 기관 방침을 설명함).	4	2
10.	이중(다중)관계	수퍼바이저는 역할과 관련된 갈등을 적절하게 다룬다(예: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의 사적인 관계, 지도교수-지도학생 간의 관계에서의 갈등, 행정적 업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5	3

표 1. 슈퍼바이저 윤리지침 목록

(계속)

윤리지침 범주	윤리지침 내용	문헌 빈도	
		국외	국내
11. 위기지원 및 개입	위기 상황에서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지와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고, 슈퍼바이지를 적절하게 지원한다(예: 비상 연락처 및 위기상황 대처 절차 알려주기, 슈퍼바이저 부재 시 다른 슈퍼바이저의 연락처 알려주기).	3	0
12. 슈퍼비전 및 슈퍼바이저/슈퍼바이지 역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슈퍼비전 첫 회기 및 이후 필요할 경우,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저로서의 역할과 의무뿐만 아니라 슈퍼바이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한다.	5	2
13. 내담자의 개인 특성에 대한 민감성	슈퍼바이저는 내담자의 '나이, 성별, 성 정체성/지향성, 결혼/동거, 출신지역,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정치적 신념, 인종/민족, 문화'와 관련된 문제를 적절하고 민감하게 다룬다.	4	1
14. 종결 및 추수개입	슈퍼바이저는 종결과 추수개입에 대한 사항을 적절하게 다룬다.	2	0
15. 내담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고지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지가 내담자에게 공개해야 할 내용을 알려준다(예: 상담조건, 슈퍼바이지의 지위, 슈퍼비전을 받고 있다는 사실, 슈퍼바이저에 대한 정보, 비밀보장의 한계, 연구참여 여부).	4	0
16. 슈퍼바이지 발달 모니터링†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지가 적절하고 의미 있는 상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4	2
17. 슈퍼바이저 훈련, 역량 개발 및 지속적 교육† †	슈퍼바이저는 슈퍼비전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았고, 슈퍼바이저로서 역량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5	4
18. 연구윤리† †	슈퍼바이저는 연구와 관련된 윤리적 사안을 민감하고 적절하게 다룬다(예: 설문지 작성 요청, 연구를 위한 상담자 또는 내담자 인터뷰 의뢰, 연구자료 수집을 위해 상담자료 제공을 부탁).	4	3
19. 슈퍼비전 비용에 대한 합의† †	슈퍼바이저는 슈퍼비전을 시작할 때 재정적 사안에 대해 분명히 의사소통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슈퍼비전 비용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2	2

주. N=10 (국외문헌: 윤리규정 및 지침 5개, 시작목록 1개, 국내문헌: 윤리규정 4개).

† 로 표시된 범주는 Ladany 등(1999)의 목록에서 본래 한 범주였으나 본 연구에서 두 개로 세분화된 범주임.

† † 표시된 범주는 본 연구에서 새롭게 도출된 범주임.

된 문헌 빈도수에 따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슈퍼비전과 관련해서 국내외 모든 윤리 규정과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수행평가 및 감독’에 관한 것이었다. 이 범주는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의 목표와 평가기준에 따라 슈퍼바이저가 상담한 내용을 검토하여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시작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수집한 자료 중 7~8개의 자료에서 강조되고 있는 슈퍼비전 관련 윤리는 총 4개였다(‘성 문제’, ‘슈퍼비전과 상담의 구별’, ‘전문성/유능성의 한계에 대한 인식’, ‘이중(다중)관계’). ‘성 문제’는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저에게 성적으로 다가가거나 유혹, 자극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고, ‘슈퍼비전과 상담의 구별’은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과 상담을 분명히 구별하여 개인 또는 집단 상담자로서의 역할은 삼가며, 필요시 다른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도록 적절히 연계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성/유능성의 한계에 대한 인식’ 범주는 슈퍼바이저 자신과 슈퍼바이저의 전문성의 한계를 적절히 인식하고 이에 대해 솔직하게 개방하며, 필요시 슈퍼바이저가 다른 전문가들과 적절하게 의사소통하도록 촉진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이중(다중)관계’는 슈퍼바이저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전문적 판단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중(다중)관계를 삼가며, 해로울 수 있는 이중(다중)관계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작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수집한 자료 중 4~5개의 자료에 제시되어있는 슈퍼비전 관련 윤리는 총 6개였다(‘슈퍼바이저의 개인 특성에 대한 민감성’, ‘다양한 관점에 대한 수

용’, ‘윤리적 행동에 대한 모델링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처’, ‘슈퍼비전 및 슈퍼바이저 존중’, ‘슈퍼비전에서의 비밀보장’, ‘내담자의 개인 특성에 대한 민감성’). ‘슈퍼바이저의 개인 특성에 대한 민감성’ 범주는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저의 나이, 성별, 성 정체성/지향성, 사회경제적 지위 등 문화적인 이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슈퍼바이저에게 반응하며, 슈퍼바이저-슈퍼바이저 간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생각과 감정들을 개방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양한 관점에 대한 수용’은 슈퍼바이저가 다양한 최신 지식들을 기반으로 여러 다른 상담접근들에 대해 개방적으로 이야기하며, 슈퍼바이저의 견해 또한 존중해 주는 태도를 강조하는 범주다. ‘윤리적 행동에 대한 모델링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처’ 범주는 윤리적 사안이 발생했을 때 슈퍼바이저가 그것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슈퍼바이저와 개방적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하며, 슈퍼바이저 역시 윤리적 기준이나 책임을 알게 해서 이를 지키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슈퍼비전 및 슈퍼바이저 존중’은 슈퍼바이저와 약속한 슈퍼비전 시간에는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엄수하고, 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예, 성 학대, 주요 타인과의 관계, 상담 받은 경험 등)에 대해 슈퍼바이저가 필요 이상으로 개방하지 않도록 슈퍼바이저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배려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슈퍼비전에서의 비밀보장’ 범주는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에서 다른 내용들에 대해 비밀보장의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내용뿐 아니라 슈퍼비전 시 필요한 내담자나 상담 관련 정보를 기록, 저장, 전송할 때에 안전하게 다루도록 슈퍼바이저에게

요청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내담자의 개인 특성에 대한 민감성’ 범주는 슈퍼비전 시 슈퍼바이저가 상담하고 있는 내담자에 대해서도 나이, 성별, 성 정체성/지향성,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같은 다문화적 이슈를 고려하여 민감하고 적절하게 사례를 다루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작목록을 포함하여 수집한 자료 중 1~3개의 자료에 언급되어있는 슈퍼비전 관련 윤리는 ‘위기지원 및 개입’, ‘종결 및 추수개입’, ‘내담자가 알아야할 사항에 대한 고지’와 관련된 것이었다. ‘위기지원 및 개입’은 내담자가 위기 및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할지, 슈퍼바이저에게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를 슈퍼바이저에게 명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결 및 추수개입’은 상담 종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갑작스러운 중단과 적절한 추수개입 방법을 다뤄야 하며, 슈퍼비전을 종결할 때에도 미리 슈퍼바이저에게 예고하거나 다른 슈퍼바이저에게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내담자가 알아야할 사항에 대한 고지’는 슈퍼바이저가 내담자에게 공개해야할 것들(예,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을 받고 있다는 사실, 슈퍼바이저에 대한 정보, 비밀보장의 한계 등)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퍼바이저 윤리지침 이행 현황 분석

앞서 구성된 슈퍼바이저 윤리지침 목록을 바탕으로 ‘수퍼바이저 윤리 수행 및 행동 질문지(Supervisor Ethical Practices and Behavior

Questionnaire)’를 제작하였다. 그런 다음, 질문지를 사용해서 우리나라 슈퍼바이저들이 지각한 슈퍼바이저의 윤리지침 이행/불이행 빈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외 선행연구와 비교하였다.

방 법

연구참여자와 모집절차

본 연구에서는 슈퍼바이저의 윤리적 수행 및 행동에 대해 단편적인 기억에 치우치지 않고 생생한 기억을 보고할 수 있는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기관에 소속되어 개인 슈퍼비전 또는 소그룹 슈퍼비전(수퍼바이저 1명과 슈퍼바이저 2~3명)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기관에 소속되어있지 않더라도 한 슈퍼바이저에게 최소 2회 이상 슈퍼비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슈퍼바이저들을 연구참여자로 한정하였다. 한 명 이상의 슈퍼바이저로부터 슈퍼비전을 받은 참여자들에게는 가장 많이 슈퍼비전을 받았던 슈퍼바이저를 생각하며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총 203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그 중 155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76.4%의 회수율을 보였다. 연구참여자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14명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41명의 설문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남성이 16명(11.3%), 여성 124명(87.9%), 미보고 1명(0.7%)으로 여성의 참여 비율이 높았으며, 평균 연령은 36.72세($SD=7.65$)였다. 전공은 상담이 123명(86.2%)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가족 7명(10.5%), 임상심리 1명(0.7%), 특수상담 1명(0.7%), 사회복지

1명(0.7%) 순이었다(미보고 4명, 2.8%). 최종 학력은 학사졸업 13명(9.2%), 석사제학 32명(22.7%), 석사졸업 62명(44.0%), 박사과정 30명(21.3%), 박사졸업 2명(1.4%), 미보고 2명(1.4%)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상담경력은 평균 35.72개월($SD=26.8$, $range=3\sim 151$)이었으며, 연구참여 당시 상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87명(61.7%)으로, 이들 중 1급은 14명(9.9%), 2급은 73명(51.8%)이었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상담센터에서 가장 많이 상담을 하고 있었고(62명, 44.0%), 청소년상담기관 30명(21.3%), 사설상담기관 16명(11.3%), 초중고등학교 10명(7.1%), 사회복지기관 6명(4.3%), 기타 5명(3.5%) 순이었으며, 두 개 이상의 기관에서 상담을 실시한다고 보고한 사람은 12명(8.4%)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슈퍼바이저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 최근의 선행연구들과 유사한데, 이들 연구에서도 대학상담센터에 소속된 참여자들이 가장 많았고 그 비율은 35.5~54.0%에 이르렀다(예, 소수연, 2012; 윤계현, 2015; 이다슬, 2016; Son, Ellis, & Yoo, 2013). 연구참여자가 지향하는 상담 이론적 성향은 절충적 또는 통합적 접근이 82명(58.2%)으로 가장 많았고, 인본주의/인간중심 31명(22.0%), 인지행동 15명(10.6%), 정신역동 8명(5.7%) 순으로 보고하였다(기타 4명, 2.8%; 미보고 1명, 0.7%). 학위과정 중 정규수업에서 상담 윤리 과목을 한 과목 이상 수강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39명(27.7%), 수강 경험이 없는 참여자는 102명(72.3%)이었다. 상담 슈퍼비전 과목을 한 과목 이상 수강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70명(49.6%), 수강 경험이 없는 참여자는 71명(5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가 설문 응답 시 떠올린 슈퍼바이저로부터 마지막 슈퍼비전을 받은 시점은

평균 12.91주 전($SD=14.24$, $range=1$ 주전~48주전)이었다. 슈퍼바이저의 성별은 남성이 27명(19.1%), 여성 112명(79.4%)으로 슈퍼바이저 역시 여성이 더 많았다(미보고 2명, 1.4%). 슈퍼바이저가 소속된 기관은 대학상담센터 65명(46.1%), 사설상담기관 53명(37.6%), 청소년상담기관 6명(4.3%), 초중고등학교 1명(0.7%) 순이었으며(기타 13명, 9.2%), 두 개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슈퍼바이저는 3명(2.1%)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이 받은 슈퍼비전의 형태는 개인슈퍼비전 72명(51.1%), 소그룹슈퍼비전 55명(39.0%)으로 개인슈퍼비전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중복기재 14명, 9.9%). 설문 응답을 위해 떠올린 슈퍼바이저와의 총 슈퍼비전 횟수는 평균 15.9회($SD=19.2$, $range=2\sim 100$)였고, 슈퍼비전 빈도는 일주일에 두 번이 2명(1.4%), 일주일에 한 번 35명(24.8%), 2주일에 한 번 25명(17.7%), 한 달에 한 번 55명(39.0%), 기타 24명(17.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회당 슈퍼비전 진행 시간은 평균 75.9분($SD=31.9$)이었으며, 슈퍼바이저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슈퍼비전을 받은 참여자는 80명(56.7%)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슈퍼비전을 받은 참여자(60명, 42.6%)보다 많았다(미보고 1명, 0.7%). 슈퍼바이저의 상담 이론적 성향은 절충적 또는 통합적 접근이 72명(51.1%), 인본주의/인간중심 24명(17.0%), 정신역동 22명(15.6%), 인지행동 11명(7.8%) 순으로 보고되었다(기타 12명, 8.5%).

자료 수집을 위해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첫째, 연구자들은 주변 상담 동료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최근 1년 이내에 개인 또는 소그룹 슈퍼비전을 일정 기간 받았을 경우 연구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다른 상담자들을 소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여 의사를 밝힌 상담자들에게 연구자들이 연구 목적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한 후, 설문패킷(연구 설명문, 설문지, 참여자 동의서)을 직접 주거나 이메일로 전달하여 설문에 응하게 하였다. 둘째,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는 서울 소재 대학상담센터와 사설 상담기관에 전화를 걸어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공문이나 연구 설명문 등 관련 자료들을 발송하여 자료 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여 의사를 밝힌 3개 기관에 연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연구 목적과 절차, 설문지 구성과 응답 방법 등을 설명한 후 설문패킷을 전달하고 응답한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셋째, 사전에 양해를 구한 후 상담 교육 워크숍에 참석한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취지와 절차를 설명하고 모집 광고문을 배포하였다. 현장에서 설문에 응하기를 희망한 사람들에게는 설문패킷을 직접 나누어 주었으며, 이메일로 참여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는 연구자들이 안내 메일과 함께 설문패킷을 첨부하여 전달하였다. 넷째, 상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연구참여자 모집 광고포스터를 탑재하고 연구참여를 원할 경우 직접 연구자들에게 이메일로 참여 의사를 알리도록 안내하였다. 참여 의사 메일을 보낸 상담자들에게는 설문패킷과 함께 본 연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메일을 통해 전달하였다. 본 설문은 단 회 설문이었으며,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다. 설문에 응해준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였다.

측정도구

우리나라 슈퍼바이저들이 지각한 슈퍼바이

저의 윤리적 수행을 측정하기 위해, 앞서 구성한 슈퍼바이저 윤리지침 범주를 바탕으로 ‘슈퍼바이저 윤리 수행 및 행동 질문지(The Supervisor Ethical Practices and Behavior Questionnaire: SEPBQ)’를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이 슈퍼바이저 윤리지침 목록 구성 과정에서 발췌·요약한 슈퍼비전 윤리 관련 121개 핵심문장들과 Ladany 등(1999)이 제작한 슈퍼바이저 윤리 수행 설문지(Supervisor Ethical Practices Questionnaire: SEPQ), 슈퍼바이저 윤리 행동 척도(Supervisor Ethical Behavior Scale: SEBS)를 참고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우선, 질문지 제작에 참고한 SEPQ와 SEBS의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슈퍼바이저 윤리 수행 설문지

슈퍼바이저 윤리 수행 설문지(Supervisor Ethical Practices Questionnaire: SEPQ; Ladany et al., 1999)는 슈퍼바이저가 윤리적으로 슈퍼비전에 임했는지를 슈퍼바이저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도구이다. Ladany 등(1999)은 SEPQ 제작을 위해 상담 관련 주요 학회들의 윤리규정과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윤리지침 범주 및 이에 해당되는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심리치료사들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수행하였다. 예비연구를 통해 윤리지침 범주가 잘 분류되었는지, 각 범주에 포함된 지침의 내용이 적합한지, 표현의 명확성 및 설문지의 형식 등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척도의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최종적으로 SEPQ는 15개의 슈퍼바이저 윤리지침 범주로 구성되었고, 슈퍼바이저로 하여금 지침을 읽고 자신의 슈퍼바이저가 이를 준수했는지를 ‘예/아니오’로 응답하게 한다. 만일 자신의 슈퍼바이저가 윤리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체크할 경우 슈퍼바이저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기술하도록 요청하는데, 이 상황에 대해 슈퍼바이저와 의논했는지, 슈퍼바이저 외에 의논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는지, 기관 내 책임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이 상황이 내담자와의 상담과 상담자 자신에게 정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질문한다. Crall(2011)의 연구에서 SEPQ 점수(지켜지지 않은 윤리지침의 총 수)는 작업동맹 하위 척도인 목표($r=-.67, p<.01$), 과제($r=-.64, p<.01$), 유대($r=-.64, p<.01$)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슈퍼바이저의 윤리적으로 의심되는 행동($r=.43, p<.01$), 슈퍼바이저의 불안($r=.39, p<.01$)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 SEPQ의 공인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수퍼바이저 윤리 행동 척도

수퍼바이저 윤리 행동 척도(Supervisor Ethical Behavior Scale: SEBS; Ladany et al., 1999) 또한 슈퍼바이저의 관점에서 슈퍼바이저의 윤리적 행동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앞서 설명한 SEPQ와 달리 SEBS는 슈퍼바이저의 윤리적 또는 비윤리적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SEBS는 SEPQ의 15개 윤리지침에 대응되는 3개씩의 문항, 총 4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예, SEPQ ‘성적 이슈’ 지침에 해당되는 SEBS 행동 문항: “수퍼바이저는 나를 유혹하거나 성적으로 자극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다”, “수퍼바이저는 나에게 직/간접적으로 성관계를 제안하였다”, “수퍼바이저는 나와 이성으로서 또는 성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삼갔다[역채점]”). 슈퍼바이저는 자신의 슈퍼바이저가 각각의 행동을 보였는지를 ‘예/아니오’로 응답하는데, 지켜지지 않은 문항의 수가 많을수록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에서 윤리적 수행을 덜한 것을 의미한다. SEBS는

SEPQ와 정적 상관($r=.80, p<.001$)을 보여 공인타당도가 확보되었고, 작업동맹 하위 척도인 목표($r=-.73, p<.01$), 과제($r=-.78, p<.01$), 유대($r=-.68, p<.01$), 그리고 슈퍼비전 만족($r=-.72, p<.01$)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Ladany et al., 1999). SEBS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Ladany et al., 1999).

수퍼바이저 윤리 수행 및 행동 질문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슈퍼바이저 윤리 수행 및 행동 질문지(The Supervisor Ethical Practices and Behavior Questionnaire: SEPBQ)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분석팀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6명의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예비 연구를 실시하여 질문지의 내용과 형식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였다.

SEPBQ 구성 형식. 연구자들은 슈퍼바이저 윤리지침 범주를 먼저 제시하고, 이어서 각 지침을 구현하는 3~4개의 문항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SEPBQ를 구성하였다(부록1 참조). Ladany 등(1999)이 제작한 SEPQ의 구성 형식을 기본 골자로 하되, 우리나라 슈퍼바이저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질문지 형식을 변경하였다. 기존 SEPQ의 경우, 슈퍼바이저 윤리지침 범주 및 내용만을 제시한 후 슈퍼바이저로 하여금 슈퍼바이저의 윤리적 수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다소 모호한 큰 틀을 제공함으로써 평정자가 보다 자유롭게 슈퍼바이저의 윤리적 행동을 연상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슈퍼바이저의 경험 또는 슈퍼비전 윤리와 관련된 선행 지식 정도에 따라 슈퍼바이저의 윤리적 수행 여부를 다르게 판

단할 수 있다는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특히, 수퍼비전과 관련된 윤리지침에 익숙하지 않은 상담자일 경우 포괄적인 지침만을 읽고 수퍼바이저의 윤리적 수행을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윤리지침 범주 및 내용에 이어서 수퍼바이저의 윤리적(또는 비윤리적) 수행과 관련된 문항을 함께 제시하였다(예, 윤리지침 범주 및 내용 → ‘이중/다중관계: 수퍼바이저는 역할과 관련된 갈등을 적절하게 다룬다’, 문항 →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저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전문적 판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중/다중관계를 삼갔다 [윤리적 행동]’,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 이외의 상황에서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려 했다[비윤리적 행동]’).

한편, ‘예/아니오’로만 응답하는 SEPQ나 SEBS와는 달리 SEPQB에는 ‘해당 없음’ 선택지를 추가하였다. 즉, 제시된 내용과 관련된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예, “자살 또는 타인을 살해할 가능성이 있는 내담자가 있을 때, 수퍼바이저는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아니오’로만 응답할 수 없는 경우(예, “평가기준이 미리 공지되고 일정 기간 동안 수차례 수퍼비전이 진행되었을 경우, 수퍼바이저는 미리 공지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였다”) ‘해당 없음’ 선택지를 추가하였다. 또한 행동 문항에 제시된 상황 이외에 자신의 수퍼바이저가 해당 윤리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상황이 떠올랐을 경우,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후, ‘위반의 심각도, 상담 및 연구참여자 자신에게 미친 영향, 관련된 고민을 의논하

상대’를 묻는 추가질문에도 답하도록 요청하였다.

SEPQB 세부 문항. 연구자들은 앞서 목록화한 윤리지침 범주(표 1 참조)에 해당되는 행동 문항들을 구성하기 위해, 수퍼바이저 윤리 행동 척도(SEBS)에 포함된 45개 문항을 시작목록으로 활용하였다. 연구자들은 SEBS의 각 문항들에 대해 우리나라 수퍼비전 상황에 적합한지, 수퍼바이저가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인지, 수퍼바이저가 쉽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지 등을 고려하여 문항의 적합도 및 이해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네 명의 연구자 중 2명 이상이 3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SEBS 문항 20개 중 14개 문항은 삭제하였고, 6개 문항은 표현을 수정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29개의 새로운 문항을 도출하였는데, 이를 위해 수퍼바이저 윤리지침 목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췌·요약한 핵심문장들과 상담 수퍼비전 관련 저역서, 우리나라 수퍼바이저들의 수퍼비전 경험을 주제로 한 실증 연구들을 참고하였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이나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구성한 문항들을 다시 읽으면서 추가하고 보완할 사항에 대해 의논하고 표현을 보다 더 명료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완성된 SEPQB는 최종 62개 문항으로 확정되었으며(부록2 참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새롭게 구성한 주요 문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몇몇 수퍼비전 및 윤리 관련 저서들에서는 수퍼비전을 실시하기 전에 수퍼비전과 관련된 주요 사

안을 슈퍼바이저에게 고지하고 사전 동의 (informed consent)를 구하는 내용을 문서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다(Bernard & Goodyear, 2008; Corey, Haynes, Moulton, & Muratori, 2010; Sperry, 2007). 마찬가지로, 훈련 및 교육과정에서 구두로 동의, 허락, 승인한 내용을 문서화해야 한다는 내용은 미국심리학회(2014)뿐 아니라 한국심리학회 윤리규정(2016)에도 명시되어 있었다. 연구자들은 이를 반영하여 ‘수퍼비전 및 슈퍼바이저/수퍼바이저 역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범주에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저의 경력, 상담 및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바이저의 이론적 성향, 수퍼비전 목표 및 방침, 평가원칙,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미리 알려주었다”와 “이에 대해 문서로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국내 윤리규정과 연구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퍼바이저를 존중하는 수퍼바이저의 태도나 자세가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심리학회(2016) 윤리규정 내 ‘교육 및 수련’ 장에서는 교육자로서의 심리학자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뿐 아니라, 수련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인식하고 수련생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었다(한국심리학회, 2016, 5장 40조 2, 3항). 실증적인 연구에서도 수퍼바이저가 수퍼바이저를 대하는 태도(예, 수퍼바이저의 부정적인 평가나 비난, 수퍼바이저에 대한 신뢰와 존중 여부, 공감과 지지 등)가 수퍼비전과 수퍼바이저에게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었다(이승은, 정남운, 2003; 지승희

등, 2005; 지승희 등, 2014; 최한나, 김창대, 2008; 홍영식, 한재희, 2012). 따라서 연구자들은 ‘수행평가 및 감독’ 범주에 “수퍼바이저는 내 인격을 존중하면서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하였다”는 문항을 포함시켰고, ‘수퍼비전 및 수퍼바이저 존중’ 범주에 “수퍼바이저는 나를 수퍼바이저로서 신뢰하고 배려하면서 내 판단과 의도를 존중해 주었다”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한편, 수퍼바이저 윤리지침 목록 구성 과정에서 새롭게 도출된 ‘수퍼바이저 훈련, 역량 개발 및 지속적 교육’, ‘연구윤리’, ‘수퍼비전 비용에 대한 합의’ 범주에 대해서는 윤리규정 및 지침을 충실히 반영하는 문항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수퍼바이저 역시 자신의 역량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함을 강조하는 윤리규정 및 지침을 반영하여 ‘수퍼바이저 훈련, 역량 개발 및 지속적 교육’ 범주에 “수퍼바이저는 상담, 수퍼비전 주제 및 기술과 관련한 교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았다” 등의 문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수퍼바이저가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수퍼바이저는 연구참여(또는 불참)가 수련 성적이나 수퍼비전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면서 내게 연구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등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부담에 대한 의사소통과 합의를 강조하는 규정 및 지침 내용을 반영하여 ‘수퍼비전 비용에 대한 합의’ 범주에는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을 시작할 때 수퍼비전 비용, 지불방식 등에 대해 나와 의논하였다.” 등의 문항을 새롭게 구성하여 추가하였다.

전문가 검토 및 예비 연구 실시. 연구자들이

은 SEPBQ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수퍼비전, 척도 제작과 관련해서 다수의 연구를 수행한 상담교수 1인에게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하였다. 또한 SEPBQ를 확정하기 전에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질문지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여 질문지 내용 및 형식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예비연구(preliminary study)를 실시하였다. 이때 의도적 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자들의 지인 중 상담 전공 석·박사 학위과정에 있거나 졸업한 상담자 중 최근 1년 이내에 개인 또는 소그룹 수퍼비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상담자들을 모집하였다. 질문지 평정에 참여한 상담자 6명은 모두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0세($SD=2.76$)였다. 이 중 4명은 상담 관련 2급 자격증을, 2명은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상담 경력은 평균 36.50개월($SD=18.86$, range=12~60개월), 지금까지 실시한 상담 사례 수는 평균 116.33개($SD=190.58$, range=5~500사례)였다. 현재 이들이 만나고 있는 수퍼바이저는 모두 여자였으며, 4명은 수퍼비전 비용을 지불한다고 응답하였고 2명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현재 만나고 있는 수퍼바이저로부터 수퍼비전을 받은 횟수는 평균 8.16회($SD=6.73$, range=3~20회)였고, 평균 71.67분($SD=14.72$, range=60~90분)의 수퍼비전을 3명은 매주 한 번, 1명은 격주로 한 번, 2명은 한 달에 한 번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질문지 평정에 참여한 상담자들은 우선 현재 수퍼바이저와의 수퍼비전 경험을 떠올리며 SEPBQ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응답 소요시간을 기술하고, 설문 내용, 질문지 구성 및 형식의 이해도와 적합도를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해도와 적합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로 평가하였다. 각 평가 항목에 대해 3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부여했을 경우, 그 이유 뿐 아니라 제안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요청하였다. 설문 응답에 소요된 평균 시간은 31.50분($SD=12.23$, range=20~50분)으로 나타났는데, 참여자들은 설문 응답에 다소 피로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SEPBQ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평균 3.78점($SD=0.66$, range=3.2~5)으로 나타났으며, 구성 및 형식적 측면의 적합도는 평균 3.67점($SD=1.21$, range=2~5)으로 나타났다. 이해하기 어렵거나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된 문장과 단어들은 평정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질문 제시 순서 및 배치 방식 또한 보다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한편, '해당 없음' 선택지가 제시된 문항과 제시되지 않은 문항이 혼재되어 있어서 '해당 없음'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피드백이 있었다. 따라서 설문 응답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질문지 서두에 문항이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거나 문항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 해 '해당 없음'에 응답하라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평정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질문지를 평정자들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검토 받은 후 질문지 구성을 종료하였다.

결 과

수퍼바이저 윤리지침 이행/불이행 빈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수퍼바이저가 각각의 윤리지침 범주에 포함된 모든 내용을 준수했다고 응답했을 때 수퍼바이저가 해당 윤리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

였다. 즉, 한 문항이라도 따르지 않았다고 응답했을 경우에는 해당 윤리지침이 위반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예를 들어, ‘성 문제’에서 “수퍼바이저는 나를 유혹하거나 성적으로 자극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다”라는 문항과 “수퍼바이저는 나에게 직/간접적으로 성관계를 제안하였다”라는 문항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했다면 슈퍼바이저가 윤리지침을 따른 것으로, 반면 둘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했다면 윤리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코딩하였다. 또한 참여자가 특정 범주의 모든 하위 행동 문항들에 대해 아예 응답하지 않았거나 모두 ‘해당 없음’에 응답한 경우, 그 지침은 관련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표 2에 제시된 결과는 무응답이나 ‘해당 없음’에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참여자들을 모수로 하여, 각 윤리지침이 이행되었거나 이행되지 않은 비율을 산출한 것이다.

자료 분석 결과, 설문에 응답한 슈퍼바이저들은 대체로 자신의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 윤리를 준수했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슈퍼바이저가 19개 윤리지침 중 평균 10.99개의 윤리지침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SD=3.48$), 특히 ‘수퍼바이저 훈련, 역량 개발 및 지속적 교육’(85.8%, 121명, $N=141$), ‘윤리적 행동에 대한 모델링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처’(85.6%, 119명, $N=139$), ‘수퍼비전 비용에 대한 합의’(82.6%, 71명, $N=86$)에 대해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잘 이행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높은 이행 비율을 보인 ‘수퍼바이저 훈련, 역량 개발 및 지속적 교육’ 지침의 하위 행동 문항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슈퍼바이저들은 자신의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 방법이나 기술에 대한 훈련을 받았을 뿐

아니라(95.0%, 134명, $N=141$),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담 및 슈퍼비전 관련 지식을 갖추고 있고(90.8%, 128명, $N=141$), 관련 교육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다(90.8%, 128명, $N=141$). 다음으로 높은 이행 비율을 보인 ‘윤리적 행동에 대한 모델링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처’ 범주에 대해서는, 윤리적 사안이 발생했을 때 슈퍼바이저가 그 사안에 대해 슈퍼바이저인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보고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95.5%, 64명, $N=67$). 슈퍼비전 비용 및 지불 방식과 관련된 ‘수퍼비전 비용에 대한 합의’ 범주에 대해서도, 슈퍼바이저가 미리 구체적인 내용을 공지하거나(91.1%, 41명, $N=45$), 다른 슈퍼바이저들과 비교해서 납득할만한 수준의 비용을 요구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93.2%, 69명, $N=74$). 이밖에도, ‘수퍼비전 및 슈퍼바이저 존중’(78%, 110명, $N=141$), ‘수행평가 및 감독’(73.8%, 104명, $N=141$), ‘위기 지원 및 개입’(73%, 73명, $N=100$), ‘다양한 관점에 대한 수용’(73%, 103명, $N=141$), ‘내담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고지’(70.8%, 80명, $N=113$), ‘이중(다중)관계’(70.2%, 99명, $N=141$) 범주에 대해서도 응답한 참여자의 70% 이상이 자신의 슈퍼바이저가 잘 이행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윤리지침 불이행 비율 또한 분석하였는데, 19개 윤리지침 범주 중 평균 5.74개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D=3.21$). 우선, ‘수퍼비전 및 슈퍼바이저/수퍼바이저 역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비율이 83%(117명, $N=141$)로 가장 많았고, ‘연구윤리’ 52.6%(20명, $N=38$), ‘수퍼비전과 상담의 구별’ 50.4%(71명, $N=141$)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퍼비전 및

표 2. 슈퍼바이저 윤리지침 이행/불이행 비율 비교

윤리지침 범주	본 연구		Ladany 등 (1999)	Crall (2011)
	이행비율, 순위	불이행비율, 순위	불이행비율, 순위	불이행비율, 순위
1. 슈퍼바이저의 개인 특성에 대한 민감성	57.4, 15 (81/141)	42.6, 4 (60/141)	6.6, 10	8.3, 5
2. 성 문제	80.0, 4 (40/50)	20.0, 15 (10/50)	1.3, 15	2.6, 12
3. 슈퍼비전과 상담의 구별	49.6, 17 (70/141)	50.4, 2 (71/141)	4.6, 14	5.8, 8
4. 다양한 관점에 대한 수용	73.0, 7 (103/141)	27.0, 11 (38/141)	17.9, 2	9.6, 3
5. 전문성/유능성의 한계에 대한 인식	64.5, 12 (91/141)	35.5, 7 (50/141)	8.6, 5	6.4, 6
6. 윤리적 행동에 대한 모델링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처	85.6, 2 (119/139)	14.4, 16 (20/139)	7.9, 7	9.6, 3
7. 수행평가 및 감독	73.8, 6 (104/141)	26.2, 13 (37/141)	33.1, 1	18.6, 1
8. 슈퍼비전 및 슈퍼바이저 존중	78.0, 5 (110/141)	22.0, 14 (31/141)	12.6, 4	10.9, 2
9. 슈퍼비전에서의 비밀보장	58.6, 14 (82/140)	41.4, 5 (58/140)	17.9, 2	1.9, 14
10. 이중(다중)관계	70.2, 10 (99/141)	29.8, 9 (42/141)	6.0, 12	4.5, 10
11. 위기지원 및 개입	73.0, 7 (73/100)	27.0, 11 (27/100)	7.3, 9	2.6, 12
12. 슈퍼비전 및 슈퍼바이저/수퍼바이저 역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17.0, 19 (24/141)	83.0, 1 (117/141)	8.6, 5	4.5, 10
13. 내담자의 개인 특성에 대한 민감성	63.8, 13 (90/141)	36.2, 6 (51/141)	6.6, 10	6.4, 6
14. 종결 및 추수개입	69.5, 11 (98/141)	30.5, 8 (43/141)	5.3, 13	5.8, 8
15. 내담자가 알아야할 사항에 대한 고지	70.8, 9 (80/113)	29.2, 10 (33/113)	7.9, 7	1.3, 15
16. 슈퍼바이저 발달 모니터링†	53.2, 16 (75/141)	46.8, 3 (66/141)	8.6, 5	4.5, 10
17. 슈퍼바이저 훈련, 역량 개발 및 지속적 교육† †	85.8, 1 (121/141)	14.2 (20/141)	—	—
18. 연구윤리† †	47.4, 18 (18/38)	52.6 (20/38)	—	—
19. 슈퍼비전 비용에 대한 합의† †	82.6, 3 (71/86)	17.4 (15/86)	—	—

주. 본 연구 결과에서 윤리지침 범주별로 괄호 안의 분모가 다른 이유는 참여자가 해당 지침의 모든 하위 행동 문항들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거나 모두 '해당 없음'으로 답한 자료를 결측치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Ladany 등(1999)과 Crall(2011)의 연구에서는 '해당 없음' 선택지가 없었으며, 동일한 전체 모수로 각 윤리지침의 불이행 비율을 분석하였음. Ladany 등(1999)의 연구에서 전체 모수 N=151. Crall(2011)의 연구에서 전체 모수 N=156.

본 연구와 Ladany 등(1999), Crall(2011)의 불이행 순위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새롭게 구성한 17, 18, 19번은 순위 산출에서 제외하였음.

† 로 표시된 범주는 Ladany 등(1999)과 Crall(2011)의 연구에서 한 범주였으나 본 연구에서 두 개로 세분화된 범주임.

† † 표시된 범주는 본 연구에서 새롭게 추가된 범주임.

수퍼바이저/수퍼바이저 역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범주에 속하는 문항들의 경우,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91%(91명, N=100), 수퍼바이저의 경력, 상담·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바이저의 이론적 성향, 수퍼비전의 목표 및 방침, 평가원칙,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45.4%(64명, N=141)로 보고되었다. '연구윤리' 범주에서는 연구참여를 제안할 때 연구참여 여부가 수련 성적이나 수퍼비전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58.6%(17명, N=29), '수퍼비전과 상담의 구별' 범주에서는 수퍼비전과 상담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상담자로서 역할을 한 경우가 44.7%(63명, N=141)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수퍼바이저 발달 모니터링' 지침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비율은 46.8%(66명, N=141), '수퍼바이저의 개인 특성에 대한 민감성'은 42.6%(60명, N=141), '수퍼비전에서의 비밀 보장'은 41.4%(58명, N=140), '내담자의 개인 특성에 대한 민감성'은 36.2%(51명, N=141)로 나타났다.

해외 연구와의 비교

다음으로, 본 연구결과를 Ladany 등(1999)과 Crall(2011)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때, 두 선행연구에서는 슈퍼바이저가 윤리지침을 얼마나 따르지 않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분석했기 때문에, 불이행 비율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새롭게 구성한 범주들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의 불이행 비율은 14.4%에서 83.0%까지 분포한 반면, Ladany 등(1999)의 연구에서는 1.3~33.1%, Crall(2011)의 연구

에서는 1.3~18.6%로 나타났다. 즉, 외국의 경우에는 윤리지침 불이행 비율의 범위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크기가 줄어들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침 범주에 따라 불이행 비율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불이행 비율이 83.0%로 가장 높게 나타난 '수퍼비전 및 수퍼바이저/수퍼바이저 역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Ladany 등(1999)의 연구에서는 8.6%, Crall(2011)의 연구에서는 4.5%에 불과해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다. '수퍼비전과 상담의 구별' 또한 본 연구에서는 50.4%로 참여자 절반이 불이행을 보고한 반면, Ladany 등(1999)과 Crall(2011)의 연구에서는 각각 4.6%, 5.8%로 불이행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수퍼바이저 발달 모니터링'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46.8%의 불이행 비율을 보였으나 Ladany 등(1999)의 연구에서는 8.6%, Crall(2011)의 연구에서는 4.5%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불이행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윤리적 행동에 대한 모델링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처' 범주(14.4%)는 Ladany 등(1999)의 연구에서는 7.9%, Crall(2011)의 연구에서는 9.6%의 불이행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각각 20.0%, 22.0%로 다른 범주에 비해 불이행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성 문제'와 '수퍼비전 및 수퍼바이저 존중'의 경우, Ladany 등(1999)의 연구에서는 1.3%, 12.6%, Crall(2011)의 연구에서는 2.6%, 10.9%의 불이행 비율을 나타냈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수퍼비전 및 수퍼바이저/수퍼바이저 역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수퍼비전과 상담의 구별', '수퍼바이저 발달 모니터링'이 불이행 비율 상위 1~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Ladany 등(1999)의 연구에서는 매우 다른 범주들의 불이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행평가 및 감독’, ‘다양한 관점에 대한 수용’, ‘수퍼비전에서의 비밀보장’이 상위 1~3위를 차지하였다. Crall(2011)의 연구에서도 불이행 비율 1위는 ‘수행평가 및 감독’이었으며, ‘수퍼비전 및 수퍼바이저 존중’이 2위, ‘다양한 관점에 대한 수용’과 ‘윤리적 행동에 대한 모델링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처’가 동비율로 3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행동에 대한 모델링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처’, ‘성 문제’, ‘수퍼비전 및 수퍼바이저 존중’의 불이행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Ladany 등(1999)의 연구에서는 ‘성 문제’, ‘수퍼비전과 상담의 구별’, ‘종결 및 추수개입’이, Crall(2011)의 연구에서는 ‘내담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고지’, ‘수퍼비전에서의 비밀보장’, ‘성 문제’, ‘위기지원 및 개입’의 불이행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수퍼바이저가 이행해야 할 윤리적 행동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나라 수퍼바이저들이 지각한 수퍼바이저의 윤리적 수행을 조사하였다. 먼저, 국내외 대표적인 상담 관련 학회의 최근 윤리규정 및 지침들을 검토하였는데, 분석 결과 19개의 수퍼바이저 윤리지침 범주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시작목록으로 삼았던 Ladany 등(1999)의 15개 수퍼바이저 윤리지침 목록에서 하나로 묶여있던 ‘전문적 역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상담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수퍼비전 및 수퍼바이저/수

퍼바이저 역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수퍼바이저 발달 모니터링’ 두 개의 범주로 세분되었고, 세 개의 범주(‘수퍼바이저 훈련, 역량 개발 및 지속적 교육’, ‘연구윤리’, ‘수퍼비전 비용에 대한 합의’)가 새롭게 도출되었다. 수퍼바이저 윤리지침 범주에 따라 ‘수퍼바이저 윤리 수행 및 행동 질문지(SEPBQ)’를 구성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수퍼바이저들의 윤리적 수행 정도를 수퍼바이저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수퍼바이저들은 자신의 수퍼바이저가 대체로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지각하였는데, 전체 19개 윤리지침 중 평균 10.99개가 준수되었다고 보고하였고, 전반적으로 각 윤리지침에 대한 이행 비율은 불이행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윤리적 행동 이행 비율은 ‘수퍼바이저 훈련, 역량 개발 및 지속적 교육’, ‘윤리적 행동에 대한 모델링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처’, ‘수퍼비전 비용에 대한 합의’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불이행 비율의 경우, 19개 윤리지침 범주 중 평균 5.74개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퍼비전 및 수퍼바이저/수퍼바이저 역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연구윤리’, ‘수퍼비전과 상담의 구별’ 범주가 상대적으로 불이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형태로 수행된 외국의 선행연구(Crall, 2011; Ladany et al., 1999)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의 불이행 비율이 외국의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퍼비전 윤리는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 뿐 아니라 수퍼비전의 최종 수혜자인 내담자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안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매우 민감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윤리지침 불이행에 초점을 두고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윤리지침 불이행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주는 ‘수퍼비전 및 슈퍼바이저/수퍼바이저 역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참여자의 83.0%가 불이행을 보고하였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해당 범주의 불이행 비율이 8.6%(Ladany et al., 1999), 4.5%(Crall, 2011)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는 무려 9~18배에 이르는 높은 수치이다. 이처럼 현격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본 연구에서 새롭게 추가한 문항들과 엄격한 결과 산출 방식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 범주에 속한 3~4개의 하위 행동 문항들 중 하나라도 따르지 않았다고 응답했을 경우, 해당 범주가 불이행된 것으로 산출하였다. 공교롭게도 연구자들이 새롭게 추가한 문항들 중에서 슈퍼바이저/수퍼바이저 역할이나 수퍼비전 시작 전 고지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문서로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였다”라는 문항에 대한 불이행 비율이 91%(91명, N=100)에 달하여 본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슈퍼바이저가 수퍼비전에 대해 오리엔테이션해야 할 내용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45.4%(64명, N=141)에 이르고, 외국의 선행연구(Crall, 2011; Ladany et al., 1999)와 동일한 문항인 “수퍼바이저로서의 자기 역할과 수퍼바이저로서의 내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해 주었다” 역시 불이행 비율이 39%(55명, N=1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수퍼비전 및 슈퍼바이저/수퍼바이저 역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범주는 수퍼비전의 기능이나 슈퍼바이저의 역할에 대한 구조화와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의 슈퍼바이저 교육 및 훈련 현실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

대학원 교과과정에 수퍼비전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있는 경우가 드물고, 수퍼비전과 관련된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희소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김명화, 홍혜영, 2017; 오효정, 최한나, 2015; 장세미, 장성숙, 2016; 최해림, 김영혜, 2006). 이를 고려했을 때, 현재 상담 현장에서 활동 중인 슈퍼바이저들 중 수퍼비전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없거나 수퍼비전과 관련된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상담에서와 마찬가지로 수퍼비전에서도 구조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구조화해야 할 내용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지 못한 슈퍼바이저들이 다수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러한 현상이 본 연구에서 슈퍼바이저들의 관점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퍼비전에서 구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슈퍼바이저는 수퍼비전에서 수행해야 할 과업과 책임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슈퍼바이저의 평가 기준에 반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지며, 수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와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Ladany et al., 1999). 실제로, 슈퍼바이저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불분명하거나 상이한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요구 받을 때, 슈퍼바이저는 역할 모호함이나 역할 갈등을 경험하고, 이는 수행 불안과 수퍼비전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졌다(Olk & Friedlander, 1992). 반면, 수퍼비전의 목표에 대해 합의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서로에게 기대하는 역할 및 과업에 대해 동의할수록 슈퍼바이저가 경험하는 역할 모호함이나 갈등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손은정, 유성경, 강지연, 임영선, 2006).

수퍼비전 구조화는 초보 상담자들에게 특히

중요한데(Usher & Borders, 1993), 숙련 상담자보다 초보 상담자들이 구조화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한다(Stoltenberg, Pierree, & McNeill, 1987; Tracey, Ellickson, & Sherry, 1989). 즉, 슈퍼비전 관련 경험이 많지 않은 초보 상담자들에게 슈퍼비전의 과정과 목표, 한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슈퍼비전에 대한 기대를 현실화하고, 슈퍼바이저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슈퍼비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혼란을 줄이고 좀 더 책임감 있고 주도적으로 슈퍼비전에 임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불이행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던 ‘슈퍼비전 관련 사전 동의서(informed consent) 작성’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슈퍼비전 초기에 슈퍼비전 관계에서의 기대와 경계를 명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권력 남용을 줄이고, 나아가 슈퍼바이저가 내담자로부터 상담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에 대한 모델링을 제공해 줄 수 있다(Remley & Herlihy, 2015; Sperry, 2007; Welfel, 2016). 구체적으로,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의 역할과 책임, 슈퍼비전에서의 비밀보장, 슈퍼바이저의 경력이나 자격 충족 여부, 상담 및 슈퍼비전에 대한 슈퍼바이저의 이론적 성향, 슈퍼비전의 목표 및 방침, 평가원칙,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평가, 슈퍼비전 내용) 등을 슈퍼바이저에게 미리 알리고, 이를 사전 동의서에 명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연구윤리’, ‘슈퍼비전에서의 비밀보장’, ‘내담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고지’, ‘슈퍼비전 비용에 대한 합의’ 범주의 윤리지침들 또한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저에게 고지해야 할 내용에 관한 것으로, 사전 동의서를 활용하면 간과하지 않고 용이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슈퍼비전과 상담의 구별’ 범주는

‘이중(다중)관계’, ‘성 문제’ 범주와 함께 슈퍼바이저-슈퍼바이지 관계에서의 경계(境界)와 관련된 문제로 참여자의 절반이 불이행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슈퍼비전과 상담의 구별’의 불이행 비율은 50.4%, ‘이중(다중)관계’의 불이행 비율은 29.8%로 나타났는데, Ladany 등(1999)의 연구에서 4.6%, 6.0%, Crall(2011)의 연구에서 5.8%, 4.5%로 보고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슈퍼바이저가 상담자, 지도교수, 직장상사, 선배였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슈퍼비전과 상담의 구별’ 문제를 포함하는 경계 관련 문제는 최근까지도 슈퍼비전에서 중요한 사안 중 하나로 지적되어왔다(예, 김계현, 1992; 방기연, 2012; 조운진 등, 2014). 이와 같은 문제가 우리나라 슈퍼비전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상담 윤리에 비해 슈퍼비전 윤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부족하고, 슈퍼비전 관계에서의 경계에 대한 슈퍼비전 주체들의 인식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윤리적 민감성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담을 배우려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데 비해 이들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의 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대학에서 슈퍼비전을 제공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교수로 임용하는 등 상담 교육 및 훈련 현장에서의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측면 역시 슈퍼비전 관계에서의 경계 문제를 지속시키는 원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했을 때, 슈퍼비전에서 이중(다중)관계를 완전히 삼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Dickey, Housley, & Guest, 1993; Ladany et al., 1999; Navin, Beamish, & Johanson, 1995; Pearse, 1990;

Siegel, 1993). 슈퍼비전의 특성상 슈퍼바이저는 수련생의 전문적 발달을 조력하면서 동시에 평가하고, 수련생을 교육하는 동시에 상담자로서 기능하는 등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슈퍼비전은 그 안에 이중(다중)관계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Kitchener & Anderson, 2011). 그러나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불편을 보고한 것처럼 슈퍼바이저와 다른 전문적인(또는 사적인) 관계를 동시에 맺고 있을 경우, 슈퍼바이저에 대한 기대 뿐 아니라 슈퍼비전의 경계 또한 모호해질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이중(다중)관계의 양상과 정도, 그리고 이것이 슈퍼비전의 본질적인 목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슈퍼비전 관계에서 경계의 문제가 지니는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슈퍼바이저나 슈퍼바이저의 개인적인 선호나 편의에만 기초해서 이중(다중)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슈퍼바이저의 평가 기준이 훼손되고, 이중(다중)관계에 포함된 사적인 측면 뿐 아니라 내재된 권력관계로 인해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는 개방적이고 진솔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방식과 내용으로 슈퍼비전이 진행될 경우,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수행이 제한되고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은 방해받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내담자에 대한 상담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다중)관계는 분명 ‘경계위반(boundary violation)’에 해당되고 명백히 비윤리적이다(Remley & Herlihy, 2015). 반면, 부득이하게 슈퍼비전에서 이중(다중)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슈퍼비전 당사자들은 이것이 과연 ‘경계교차(boundary crossing)’, 즉 당사자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서 최선의

이익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경계를 넘나드는 상황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이중(다중)관계를 형성할 경우 객관적인 평가나 피드백의 기준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슈퍼바이저의 전문성 발달 및 내담자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슈퍼비전이 진행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슈퍼비전 당사자들은 이중(다중)관계 형성이 다른 상담전문가들에게도 수용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윤리적인 행동인지를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 간의 권력 차이를 인식하고, 슈퍼비전 관계 이외에 다른 관계를 맺는 이유와 목적 등을 고려해서, 이중(다중)관계 형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Burian & Slimp, 2000).

한편, 본 연구에서 ‘성 문제’ 윤리가 준수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슈퍼바이저의 비율은 20.0%로 나타났는데, Ladany 등(1999)과 Crall (2011)의 연구에서 각각 1.3%, 2.6%였던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의 슈퍼바이저들($n=91$)은 관련된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해당 없음’에 표기하였는데, 이들을 모수에 포함하여 불이행 비율을 계산해 보더라도 7.1%로 외국 선행연구에 비해 거의 3~5배 높은 수치이다. 슈퍼비전에서 성 관련 문제를 지각하거나 보고하는 것이 어렵고(Ladany et al., 1999), 이 문제가 슈퍼비전에서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슈퍼바이저 10명이 슈퍼비전 상황에서 성 관련 문제를 경험했다고 보고한 것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더욱이 이를 보고한 10명 중 3명은 이어진 추가질문에도 응답하였는데, 해당 윤리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던 상황이 ‘내담자와의 상담의 질’과 ‘수퍼바이저 자신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1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하는 7점 리커트 척도에 3명 모두 2점에 표기하였음). 수퍼비전에서 발생하는 성 관계, 성희롱, 성적 착취는 심각한 경계위반에 해당된다(Welfel, 2016). 수퍼바이저와 성적 관계를 맺은 수퍼바이저들은 비록 당시에는 그것이 자유롭고 강압적이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는 그 관계가 강압적이었고 전문가로서의 발달에도 장애 요인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Ahlstrand, Crumlin, Korinek, Lasky, & Kitchener, 2003; Lamb, Catanzaro, & Moorman, 2003). 더욱이, 수퍼비전에서 성적 관계를 경험한 수련생들은 이후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와 성적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Pope, Levenson, & Schover, 1979).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수퍼바이저가 이성으로서 또는 성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지만, 이와 관련된 고민을 당사자인 수퍼바이저와 의논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중복응답이 가능한 추가질문이었으며,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은 참여자 7명, 동료상담사와 의논한 참여자 3명, 관련 전문가나 가까운 지인과 의논한 참여자 각 1명으로 보고됨). 이러한 상황은 수퍼비전 당사자들 간에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퍼바이저의 평가는 수퍼바이저의 자격증 취득과 이후의 수련 경험 및 입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 간에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즉,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 관계에서 권한과 힘을 갖는 반면, 수퍼바이저는 힘의 남용과 오용에 취약하다. 이런 힘의 구조에서 수퍼바

이지는 수퍼바이저의 성적 접근을 거부하거나 불편감을 이야기했을 때 처하게 될 위험과 감당해야 될 불리를 걱정하게 될 것이다. 비록 성적 접근을 거부하거나 불편감을 이야기했을 때 실제로 불이익을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오랜 기간 곤란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결국, 수퍼비전 관계에서 비윤리적인 성적 관계와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퍼비전 당사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민감해야 하고 성적 이슈와 관련해서 분명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 뿐 아니라, 수퍼비전 관계 내 힘의 역학을 이해하고 이런 맥락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문제와 해약을 인식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수퍼바이저는 사전에 이러한 문제가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수퍼바이저에게 고지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의 불편함이라도 존중하고, 필요할 경우 개방해서 진솔하게 다룰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수퍼바이저 및 내담자의 권리,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차이 존중을 강조하는 ‘수퍼바이저의 개인 특성에 대한 민감성’, ‘내담자의 개인 특성에 대한 민감성’ 범주의 불이행 비율은 각각 42.6%, 36.2%로, Ladany 등(1999)과 Crall (2011)의 연구에서 불이행 비율이 한 자리 숫자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들 범주의 불이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배경에는 우리나라 수퍼바이저들의 수퍼비전 스타일과 수퍼비전 내용, 수퍼바이저와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바이저들의 기대 간에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수퍼비전은 대체로 과업 지향적이거나 교육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고(김윤주, 2004), 지적하고 야단치는 등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교정적 피드백을 하거나 슈퍼바이저의 상담 경험과 관점을 고려하지 않는 채 일방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형태로 슈퍼비전이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지승희 등, 2005; 지승희 등, 2014). 본 연구에서도 슈퍼바이저들은 슈퍼바이저가 제공하는 평가나 피드백의 정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지만(‘수행평가 및 감독’의 불이행 비율은 13위), 추가 서술문항에서 슈퍼바이저가 평가나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이나 태도적인 측면을 지적한 참여자들이 다수 있었다(예, “개선 방법에 대해 건설적인 비판을 하기 보다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데 중점을 두는 태도”, “슈퍼바이저가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때 수용하지 않고,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론만을 적용하여 설명하듯 진행”). 즉, 상당수의 슈퍼바이저들은 자신의 슈퍼바이저가 여전히 수직적이고 일방향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직적 집단주의 문화를 대표하는 국가로 인식되어왔지만(Singelis, Triandis, Bhawuk, & Gelfand, 1995), 우리나라 상담자들은 개인 간 평등을 강조하는 수평적 개인주의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크고(금명자, 2002), 자아중심적인 감정표현 등 개인주의 문화에서 강조하는 상담접근을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서영석, 2005). 더욱이, 가장 되고 싶은 슈퍼바이저 상으로 ‘슈퍼바이저에게 초점을 맞춰 상호작용하는 슈퍼바이저’라고 응답한 연구결과(지승희 등, 2014)는 우리나라 슈퍼바이저들의 경우 자신의 개인적 특성이나 견해, 발달 수준을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이렇듯 수평적 개인주의 문화를 선호하는 슈퍼바이저들이 수직적이고 과업지향적인 슈퍼비전에 노

출될 경우, 자신의 특성이나 발달 수준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뿐 아니라 양방향의 수평적 관계에 대한 욕구에 대해 슈퍼바이저의 이해가 부족하고 덜 민감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러한 간극과 괴리로 인해 본 연구에서 슈퍼바이저 및 내담자의 권리와 다양성 존중 관련 범주의 불이행 비율이 외국 선연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저와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인식하면, 다른 견해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를 표현하기보다 슈퍼바이저의 견해를 그대로 쫓아가는 태도가 나타나고(방기연, 2006), 슈퍼바이저와의 관계 갈등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 슈퍼비전 내에서 진솔하게 개방하는 것을 힘들어한다(손승희, 2005). 상담자가 내담자의 가치관과 문화를 존중하고 개인차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강조되어왔지만(Ellis, 1991; Heppner & Roehlke, 1984), 슈퍼비전 과정에서 슈퍼바이저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졌다. 슈퍼바이저에 대한 존중과 이해는 슈퍼비전 관계뿐 아니라 내담자와의 상담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Gray et al., 2001). 따라서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저의 특성과 욕구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은 슈퍼비전 작업동맹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슈퍼바이저가 보다 질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결 및 추수개입’, ‘위기지원 및 개입’, ‘전문성/유능성의 한계에 대한 인식’ 범주의 불이행 비율은 27.0~35.5%로 나타났는데, 이들 범주 역시 Ladany 등(1999)의 연구에서 5.3~8.6%, Crall(2011)의 연구에서 2.6~6.4%의 분포를 보인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슈퍼

바이저의 실무 역량과 관련된 세 범주 중, 특히 ‘종결 및 추수개입’, ‘위기지원 및 개입’의 경우 슈퍼바이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슈퍼바이저가 적절한 지도를 받지 못한다고 인식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기적으로 한 명의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우리의 슈퍼비전 환경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슈퍼바이저들은 어려운 사례나 상황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슈퍼바이저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지만, 당면하고 있는 슈퍼비전 환경으로 인해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힘든 실정이다(소수연, 장성숙, 2011). 예를 들어, 수련생이 소속 상담기관에서 슈퍼비전을 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슈퍼바이저들이 담당하고 있는 상담사례와 슈퍼바이저의 수가 많다면, 상담 종결까지 사례 전반에 대한 관리를 받는 것은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 소속된 상담 기관이 아닌 외부에서 슈퍼비전을 받는 경우라면, 이러한 지원을 받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한편, 응급상황에서의 위기개입은 상담 현장에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실무 역량으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정규 교과과정 또는 임상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Ladany et al., 1999). 그러나 상담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하고 충분치 않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최해림, 김영혜, 2006), 슈퍼바이저 역시 이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및 개입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할 수 있다. 만약, 위기개입에 대해 슈퍼바이저가 충분히 훈련이 되어있지 않다면 부적절하게 개입하거나 슈퍼바이저로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개입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결국 본 연구에 참여한 슈퍼바이저들의 인식에 반영되었을 수 있다.

전문성 및 유능성, 즉 역량을 갖추는 일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 방법을 습득해서 타인의 요구를 충족시켜야하는 전문직 종사자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 의무다(Brincat & Wike, 2000). 상담 수련생을 지도·감독하는 슈퍼바이저 역시 많은 상담/슈퍼비전 경험과 함께 최신의 지식, 방법과 기술을 구비해야 한다(소수연, 장성숙, 2014; 장세미, 장성숙, 2016). 이때 권위나 체면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지닌 역량의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며(방기연, 2002), 끊임없이 변하는 상담/슈퍼비전 현장을 이해하고 새로운 증상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갱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Pope & Vasques, 2016). 슈퍼바이저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슈퍼바이저 개인의 노력 뿐 아니라 학회 차원의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즉, 상담전문가 양성 과정과 자격증 제도가 존재하는 것처럼, 역량 있는 슈퍼바이저 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김현주, 박재우, 심혜원, 주영아, 한영주, 2016; 전정운, 한재희, 2012; 지승희 등, 2014). 예를 들어, 학회에서는 슈퍼비전 관련 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해서 슈퍼바이저의 전문적 역량을 고양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슈퍼바이저들이 다루기 어려워하는 윤리적인 문제와 대처방법, 위기개입과 관련해서 학회 차원에서 자료와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더불어, 슈퍼바이저들의 요구를 시의적절하게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소통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슈퍼바이저들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성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 연구 참여 기준에 부합하는 참여자들을 모집하였으나, 참여자 대부분은 특정 지역(서울, 경기)에서 활동하는 초/중급의 상담 경력을 지닌 슈퍼바이저들이었다. 특히, 연구참여자의 44.0%가 대학상담센터에 소속된 슈퍼바이저들이었다. 비록 이 비율이 우리나라 슈퍼바이저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 표집된 사례수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장면에서 상담하는 슈퍼바이저들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소속 기관에 따라 슈퍼비전 상황이 다를 수 있고, 소속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슈퍼비전을 받는 경우와 필요시 개별적으로 외부 슈퍼바이저를 찾아가 슈퍼비전을 받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슈퍼바이저가 인식하는 슈퍼바이저의 윤리적 수행의 정도나 양상이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슈퍼바이저 윤리지침 이행/불이행 비율에 대한 본 연구결과가 지역과 소속기관을 달리하고 상이한 수준의 상담 경력을 지닌 슈퍼바이저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슈퍼바이저 윤리지침 이행/불이행 비율에 대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본 연구에서는 윤리지침 이행/불이행 비율을 산출할 때, 각 범주에 해당되는

모든 하위 행동 문항들에 대해 ‘해당 없음’이라고 답한 참여자들을 결측치로 처리하여 모수에서 제외한 후 계산하였다(이는 ‘성 문제’, ‘위기지원 및 개입’, ‘내담자가 알아야할 사항에 대한 고지’, ‘연구윤리’, ‘수퍼비전 비용에 대한 합의’ 5개 범주에만 해당됨). ‘해당 없음’은 제시된 문항이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거나, 제시된 문항 내용과 관련된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정되는 것임을 설문지에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 시 혼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참여자 중에는 ‘해당 없음’을 ‘윤리지침의 불이행이 없었다(수퍼바이저가 윤리적으로 수행했다)’로 해석해서 문항에 반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성 문제’의 경우 ‘해당 없음’에 응답한 참여자를 제외하고 불이행 비율을 산출하면 20%에 이르지만, 이들을 포함시키고 재산출하면 불이행 비율은 7.1%가 된다. 재산출된 결과 역시 외국 선행연구에 비해 몇 배 더 높은 뿐 아니라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결코 작은 수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참여자들이 연구자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지시문을 해석하고 응답했을 가능성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슈퍼바이저의 자기보고에 기초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슈퍼바이저의 윤리적 행동에 대한 슈퍼바이저의 인식과 실제 슈퍼바이저의 행동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슈퍼바이저의 상담 경력 등 개인적 특성에 따라 동일한 슈퍼바이저의 행동이 다르게 지각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슈퍼바이저의 관점으로 윤리지침 이행/불이행 비율을 조사하고, 슈퍼바이저/수퍼바이저의 특성에 따라 이행/불이행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타당도와 관

런해서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국내외 수퍼비전 윤리규정 및 지침들을 분석하여 수퍼바이저 윤리지침 목록을 도출하고, 상담 수퍼비전 관련 저역서, 한국 수퍼바이저들의 수퍼비전 경험을 주제로 한 실증 연구를 반영하여 ‘수퍼바이저 윤리 수행 및 행동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수퍼비전 현실에 맞게 질문지의 형식을 재구성하여 보다 정확한 현상을 드러내고자 노력하였다. 더불어, 질문지를 제작하면서 상담 수퍼비전 및 척도 개발 전문가에게 지속적인 자문을 구하였고, 질문지 내용 및 형식에 대한 동료 상담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질문지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등 검사의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제작된 본 질문지에 대해 본격적인 타당화 작업을 거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수퍼바이저/수퍼바이저를 대상으로 윤리지침 내용과 질문지 문항들이 우리나라 수퍼비전 현실을 타당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본 척도가 기존 척도와 상관이 있는지, 수퍼비전 작업동맹 등 관련 변인을 유의하게 설명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질문지는 각 윤리지침 범주에 해당하는 윤리적 행동을 수퍼바이저가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예/아니오’의 이항 척도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있다. 앞으로 질문지를 보완하여 각 하위 행동 문항에 대해 얼마나 자주/빈번하게 발생했는지, 위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등을 묻는 리커트 척도로 구성한다면, 수퍼바이저들이 경험한 수퍼바이저의 윤리적 수행 정도를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기에 더욱 용이할 것이다.

결론

수퍼비전에서의 윤리적 행동은 수퍼바이저를 교육하고 지지하며 나아가 내담자의 복지를 책임지는 수퍼바이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권장되는 실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상담 관련 학회의 윤리규정 및 지침들을 바탕으로 수퍼비전 상황에서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수퍼바이저 윤리지침 목록을 구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수퍼바이저들의 윤리적 수행에 대해 수퍼바이저의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많은 부분들이 준수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비율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윤리지침들이 지켜지면 좋은 이상향인지, 우리나라 수퍼비전 현장에서 실제로 실천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개 윤리지침은 수퍼바이저의 전문 역량 강화와 내담자의 복지 증진이라는 수퍼비전의 기본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수퍼바이저 윤리지침 목록 및 이행/불이행 비율에 대한 본 연구결과가 수퍼비전 윤리와 관련된 학계의 논의와 실증적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학회의 수퍼비전 윤리규정 및 지침 제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금명자 (2002). 청소년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 차이 및 문화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529-546.

- 김계현 (1992). 상담교육방법으로서의 개인 슈퍼비전 모델에 관한 복수 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4(1), 19-53.
- 김계현, 문수정 (2000). 상담수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18.
- 김명화, 홍혜영 (2017). 초심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교육 필요성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2), 573-594.
- 김윤주 (2004). 슈퍼바이저의 과업 및 기능수행과 상담 수련생의 슈퍼비전 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 박재우, 심혜원, 주영아, 한영주 (2016). 한국 상담원로의 상담자로서의 삶 (최해림 편, pp. 313-348). 서울: 학지사.
- 두경희, 김계현, 김동민 (2008). 슈퍼비전 성과 연구의 동향과 과제. 상담학 연구, 9(3), 1007-1021.
- 방기연 (2002). 상담 슈퍼바이저 교육에 대한 고찰. 연세교육연구, 15(1), 119-131.
- 방기연 (2006). 상담심리사의 슈퍼비전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233-254.
- 방기연 (2012). 상담 슈퍼비전에서 제기되는 윤리적인 문제들. 가족과 상담, 2(1), 1-16.
- 서영석 (2005). 내담자의 정서표현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 비교 문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35-351.
- 소수연 (2012). 슈퍼바이저의 효과적인 슈퍼비전 요소 탐색과 슈퍼비전 수행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소수연, 장성숙 (2011). 효과적인 슈퍼비전 요소에 관한 슈퍼바이저의 지각 연구. 상담학연구, 12(3), 1051-1067.
- 소수연, 장성숙 (2014). 숙련된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수행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6(2), 193-222.
- 손승희 (2005). 슈퍼비전에서 상담수련생의 개방 내용, 이유 및 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57-74.
- 손은정, 유성경, 강지연, 임영선 (2006). 슈퍼비전 작업 동맹과 상담자 경력 수준이 역할 어려움과 슈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695-711.
- 손진희 (2004). 슈퍼바이저 행동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슈퍼비전 요소 연구. 상담학연구, 5(2), 243-261.
- 송은화, 정남운 (2005). 슈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도와 실태, 만족도 연구: 숙련과정에 있는 상담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17-334.
- 신종임, 천성문, 이영순 (2004). 상담경력수준에 따른 개인상담 슈퍼비전 교육내용 요구, 실제 및 만족도 분석. 동서정신과학, 7(1), 83-101.
- 오효정, 최한나 (2015). 초보 슈퍼바이저가 겪는 어려움과 대처방법. 상담학연구, 16(5), 75-94.
- 우홍련, 허난설, 이지향, 장유진 (2015). 한국 상담자들이 경험한 윤리 문제와 대처 방법 및 상담 윤리 교육에 관한 실태 연구. 상담학연구, 16(2), 1-25.
- 유성경, 두경희, 김은하, 정여주 (2009). 슈퍼비전 형식,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슈퍼바이저 인식. 상담학연구, 10(4), 1907-1927.
- 윤제현 (2015). 슈퍼바이저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 완벽주의에 따른 수치심의 차이: 슈퍼바이저 과업지향적 스타일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다슬 (2016). 초심상담자의 자기효능감과 공감 피로의 관계에서 슈퍼비전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은, 정남운 (2003). 초심상담자의 소집단 슈퍼비전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3), 441-460.
- 이홍숙, 최한나 (2013).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경력 수준에 따른 슈퍼비전 수행과 성과의 차이. 상담학연구, 14(3), 1679-1698.
- 장세미, 장성숙 (2016). 상담 슈퍼바이저 교육과 훈련 요소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4), 488-502.
- 전정운, 한재희 (2012). 초심 슈퍼바이저의 전문성 발달과정 연구. 상담학연구, 13(6), 2607-2624.
- 조윤진, 이은진, 유성경 (2014). 상담심리치료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의 부정적인 경험의 변화 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4), 841-877.
- 지승희, 박정민, 임영선 (2005). 인턴상담원이 지각하는 개인상담 슈퍼비전에서의 도움 및 아쉬운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75-90.
- 지승희, 주영아, 김영혜 (2014). 슈퍼비전 경험과 되고 싶은 슈퍼바이저 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상담학연구, 15(5), 1671-1693.
- 최한나, 김창대 (2008). 좋은 슈퍼비전 관계에 대한 슈퍼바이저의 인식 차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21.
- 최해림 (1999). 상담자 교육과 슈퍼비전의 현재.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대학생활연구, 17(1), 1-18.
- 최해림 (2013). 슈퍼비전의 윤리. 양명숙, 고흥월, 김규식, 김동민, 김봉환, 김현아 등 (편), 한국상담학회 상담학 총서 13, 상담 슈퍼비전의 이론과 실제 (pp. 63-91). 서울: 학지사.
- 최해림, 김영혜 (2006). 한국의 상담자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연구: 상담심리 석·박사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713-729.
- 한국가족상담협회 (2014). 한국가족상담협회 윤리규정. <http://www.kafc.or.kr/> 에서 인출
- 한국상담심리학회 (2009). 상담전문가 윤리 강령. http://www.krcpa.or.kr/sub01_5.asp?menuCategory=1 에서 인출
- 한국상담학회 (2016). (사)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 <http://www.counselors.or.kr/> 에서 인출
- 한국심리학회 (2016). 한국심리학회 윤리규정. <http://www.koreanpsychology.or.kr/aboutkpa/article.asp?page=4> 에서 인출
- 홍영식, 한재희 (2012). 상담 슈퍼비전에서 상담자의 자각이 상담과정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3), 1387-1406.
- Ahlstrand, K. R., Crumlin, J., Korinek, L. L., Lasky, G. B., & Kitchener, K. S. (2003). *Sexual contact between students and educators: Issues and ethics*. In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 American Association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py. (2015). *AAMFT code of ethics*. Alexandria, VA: Author.
-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14). *ACA Code of ethics*. Alexandria, VA: Author.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4). *Guidelines for clinical supervision in health service*

- psychology. Retrieved from <http://apa.org/about/policy/guidelines-supervision.pdf>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7). *Ethical principles of psychologists and code of conduct*. Washington, DC: Author.
- Association for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1995). Ethical guidelines for counseling supervisor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4(3), 270-276.
- Barnett, J. E., Cornish, J. A. E., Goodyear, R. K., & Lichtenberg, J. W. (2007). Commentaries on the ethical and effective practice of clinical supervisio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8(3), 268-275.
- Bernard, J. M., & Goodyear, R. K. (2008). *Fundamentals of clinical supervision* (4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 Brincat, C. A., & Wike, V. S. (2000). *Morality and the professional life: Values at work*.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Burian, B. K., & Slimp, A. O. C. (2000). Social dual-role relationships during internship: A decision-making model.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1(3), 332-338.
- Corey, G., Haynes, R. H., Moulton, P., & Muratori, M. (2010). *Clinical supervision in the helping professions: A practical guide* (2nd ed.).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Cottone, R. R., & Tarvydas, V. M. (2003). *Ethical and professional issues in counseling* (2nd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Crall, J. (2011). *Ethical behavior of supervisors: Effects on supervisee experiences and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Lehigh University, Bethlehem, PA.
- Dickey, K. D., Housley, W. F., & Guest, C. (1993). Ethics in supervision of rehabilitation counselor trainees: A survey. *Rehabilitation Education*, 7(3), 195-201.
- Doehrman, M. J. G. (1976). Parallel processes in supervision and psychotherapy.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40(1), 4-104.
- Ellis, M. V. (1991). Critical incidents in clinical supervision and in supervisor supervision: Assessing supervisory issu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3), 342-349.
- Gray, L. A., Ladany, N., Walker, J. A., & Ancis, J. R. (2001). Psychotherapy trainees' experience of counterproductive events in superv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4), 371-383.
- Heppner, P. P., & Roehlke, H. J. (1984). Differences among supervisees at different level of training: Implication for a developmental model of superv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1), 76-90.
- Kitchener, K. S., & Anderson, S. K. (2011). *Foundations of ethical practice, research, and teaching in psychology* (2nd ed.). NY: Routledge.
- Ladany, N., Lehrman-Waterman, D., Molinaro, M., & Wolgast, B. (1999). Psychotherapy supervisor ethical practices: Adherence to guidelines, the supervisory working alliance, and supervisee satisfac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7(3), 443-475.
- Lamb, D. H., Catanzaro, S. J., & Moorman, A. S. (2003). Psychologists reflect on their sexual relationships with clients, supervisees, and students: Occurrence, impact, rationales and

- collegial interventio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4(1), 102-107.
- Levy, C. S. (1974). On the development of a code of ethics. *Social Work*, 19(2), 207-216.
- Navin, S., Beamish, P., & Johanson, G. (1995). Ethical practices of field-based mental health counselor supervisor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17(2), 243-253.
- Olk, M. E., & Friedlander, M. L., (1992). Trainees' experiences of role conflict and role ambiguity in supervisory relationship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3), 389-397.
- Pearse, R. D. (1990). Ethical practices in the supervision of pre-doctoral psychology interns (Doctoral dissertation, West Virginia University, 1990).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2, 1734.
- Pope, K. S., Levenson, H., & Schover, L. R. (1979). Sexual intimacy in psychology training: results and implications of a national survey. *American Psychologist*, 34(8), 682-689.
- Pope, K. S., & Vasquez, M. J. (2016). *Ethics in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A practical guide* (5th ed.). NJ: John Wiley & Sons.
- Remley, T. P. & Herlihy, B. (2015). *Ethical, legal, and professional issues in counseling* (5th ed.). NJ: Pearson Education.
- Siegel, J. L. (1993). Ethical issues in the supervisory relationship: A review with a proposal for change (Doctoral dissertation, Widener University, 1993).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4(2-B), 1113.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P., &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3), 240-275.
- Son, E., Ellis, M. V., & Yoo, S. K. (2013). Clinical supervision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 comparative descriptive stud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1(1), 48-65.
- Sperry, L. (2007). *The ethical and professional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Boston: Pearson/Allyn and Bacon.
- Stoltenberg, C. D., Pieree, R. A., & McNeill, B. W. (1987). Effects of experience on counselor trainee's needs. *The Clinical Supervisor*, 5(1), 23-32.
- Tracey, T. J., Ellickson, J. L., & Sherry, P. (1989). Reactance in relation to different supervisory environments and counselo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3), 336-344.
- Usher, C. H., & Borders, L. D. (1993). Practicing counselors' preferences for supervisory style and supervisory emphasi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3(2), 66-79.
- Welfel, E. R. (2016). *Ethics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Standards, research, and emerging issues* (6th ed.). Boston: Cengage Learning.

원고접수일 : 2017. 08. 21

수정원고접수일 : 2017. 10. 16

게재결정일 : 2017. 11. 08

Supervisee Perceptions of Counseling Supervisors' Adherence to Ethical Guidelines

Ha Yan An Young Seok Seo Sung Hwa Park Jung Yoon Lee Yu Ri Choi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s of South Korean counseling supervisees on their supervisors' ethical practices. Nineteen categories of ethical guidelines were emerged from recent ethical codes and guidelines. 'Supervisor Ethical Practices and Behavior Questionnaire' based on extracted categories was completed by 141 supervisees. Participants reported that on average, 10.99 ethical guidelines were adhered to; 5.74 guidelines were not. Rate of adherence was high in 'supervisor's training, competency development, and continuing education', 'modeling ethical behavior and coping with ethical issues', and 'arrangement on supervision fee'. Rate of violation was relatively high in 'orientation to supervision and supervisor/supervisee's roles', 'research ethics', and 'differentiating supervision from counseling'. Compared to studies overseas, rate of violation in overall categories was higher in South Korea. Since issues on supervision ethics needed to be sensitively handled, this study focused on violation of ethical guidelines in each categor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counseling supervision were discussed.

Key words : *counseling supervision, supervision ethics, supervisor ethical guidelines, supervisor ethical practices and behavior*

부 록 2

슈퍼바이저 윤리 수행 및 행동 질문지(SEPBQ) 문항

윤리지침 범주	문 항
1. 슈퍼바이저의 개인 특성에 대한 민감성	1) 슈퍼바이저는 나의 '나이, 성별, 성 정체성/지향성, 결혼/동거, 출신지역,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정치적 신념, 인종/민족, 문화'에 대해 민감하지 않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다. 2) 슈퍼바이저는 나의 '나이, 성별, 성 정체성/지향성, 결혼/동거, 출신지역,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정치적 신념, 인종/민족, 문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없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3) 슈퍼바이저는 나와 슈퍼바이저 간의 '나이, 성별, 성 정체성/지향성, 결혼/동거, 출신지역,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정치적 신념, 인종/민족, 문화' 차이에 대한 내 생각이나 감정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한 적이 있다.
2. 성 문제	1) 슈퍼바이저는 나를 유혹하거나 성적으로 자극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다. 2) 슈퍼바이저는 나에게 직/간접적으로 성관계를 제안하였다. 3) 슈퍼바이저는 나와 이성으로서 (또는 성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삼갔다.
3. 슈퍼비전과 상담의 구별	1) 슈퍼바이저는 내담자와의 상담작업과 관련이 없는 내 사적인 문제들을 상세히 다루었다. 2) 슈퍼바이저는 슈퍼비전과 상담을 분명히 구별하여 상담자(개인 또는 집단상담)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았다. 3) 슈퍼바이저는 나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 개인 또는 집단상담을 받도록 적절히 연계해 주었다.
4. 다양한 관점에 대한 수용	1) 슈퍼바이저는 내담자가 갖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주요 연구, 이론, 치료방법들은 잘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 2) 슈퍼바이저는 상담에 대한 자신의 이론적 성향을 설명할 뿐 아니라, 여러 다른 접근들에 대해 개방적으로 이야기하였다. 3) 내담자에 대한 내 생각이 슈퍼바이저의 생각과 다를 때, 슈퍼바이저는 내 생각을 존중해 주었다.
5. 전문성/유능성의 한계에 대한 인식	1) 슈퍼바이저는 본인이 다루어 본 적이 없거나 경험이 부족한 내 내담자의 문제를 슈퍼비전에서 다루었다. 2) 슈퍼바이저는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개입이나 기법을 써보라고 한 적이 있다. 3) 내 상담에 다른 전문가들이 관여하고 있을 때, 슈퍼바이저는 내가 그들과 적절하게 의사소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6. 윤리적 행동에 대한 모델링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처	1) 윤리적 사안이 있을 때, 슈퍼바이저는 그것에 대해 나와 편안하고 개방적으로 이야기하였다. 2) 윤리적 사안에 대해 의논할 때, 나는 슈퍼바이저의 윤리적 판단이나 의견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품은 적이 있다. 3) 슈퍼바이저는 내가 윤리적 기준 및 책임을 알게 하고, 실천 기준을 지키도록 장려하였다.
7. 수행평가 및 감독	1) 슈퍼바이저는 실제 상담한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채 피드백을 주거나 평가를 하였다. 2) 슈퍼바이저는 장래의 상담활동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나의 한계를 알려주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주었다. 3) 평가기준이 미리 공지되고 일정 기간 동안 수차례 슈퍼비전이 진행되었을 경우, 슈퍼바이저는 미리 공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4) 슈퍼바이저는 내 인격을 존중하면서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8. 슈퍼비전 및 슈퍼바이저 존중	1) 슈퍼바이저는 슈퍼비전이 필요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예: 슈퍼비전 도중 전화를 받거나 다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등)에 의해 방해 받는 것을 방치한 적이 있다. 2) 슈퍼바이저는 슈퍼비전 약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잘 지키지 않았다. 3) 슈퍼바이저는 필요한 경우(예: 내담자/슈퍼비전 관계/전문적 기능에 영향을 미칠 때, 슈퍼바이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나에게 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예: 성, 학대, 주요 타인과의 관계, 상담 받은 경험)을 개방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4) 슈퍼바이저는 나를 슈퍼바이저로서 신뢰하고 배려하면서 내 판단과 의도를 존중해 주었다.
9. 슈퍼비전에서의 비밀보장	1) 슈퍼바이저는 슈퍼비전에서 다른 내용들이 비밀보장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외사항도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2) 슈퍼바이저는 슈퍼비전에서 내가 이야기한 내용을 알면 안 될 사람에게 알렸다. 3) 슈퍼바이저는 슈퍼비전에 필요한 내담자, 상담 관련 정보를 안전하게 다룰 것을 요구하였다(예: 내담자 개인 신상 익명처리, 상담관련 내용 기록, 저장, 전송 등의 보안 유지).
10. 이중(다중)관계	1) 슈퍼바이저는 과거 또는 현재, 내게 개인상담을 해 준 상담자였다(이다). 2)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저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전문적 판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중(다중)관계를 삼갔다. 3) 슈퍼바이저는 슈퍼비전 이외의 상황에서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려 했다. 4) 해로울 수 있는 이중(다중)관계가 발생했을 때, 내 슈퍼바이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해결하였다.

부 록 2

수퍼바이저 윤리 수행 및 행동 질문지(SEPBQ) 문항

(계속)

윤리지침 범주	문 항
11. 위기지원 및 개입	1) 자살 또는 타인을 살해할 가능성이 있는 내담자가 있을 때, 수퍼바이저는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2) 내담자가 위기 및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수퍼바이저는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분명히 이해시켜 주었다. 3) 수퍼바이저는 내담자가 위기 및 응급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내가 수퍼바이저에게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주지 않았다.
12. 수퍼비전 및 수퍼바이저/수퍼바이저 역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1)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저로서의 자기 역할과 수퍼바이저로서의 내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해 주었다. 2)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저의 경력, 상담·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바이저의 이론적 성향, 수퍼비전의 목표 및 방침, 평가원칙,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평가, 수퍼비전 내용) 등을 미리 알려주었다. 3) 1)과 2)에 대해서 문서로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4) 내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퍼비전을 받고 있을 경우,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저로서 자격을 충족하는지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13. 내담자의 개인 특성에 대한 민감성	1) 수퍼바이저는 내담자의 ‘나이, 성별, 성 정체성/지향성, 결혼/동거, 출신지역,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정치적 신념, 인종/민족, 문화’에 대해 민감하지 않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다. 2) 수퍼바이저는 내담자의 심리검사 결과를 해석하고 문제를 진단함에 있어 ‘나이, 성별, 성 정체성/지향성, 결혼/동거, 출신지역,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정치적 신념, 인종/민족, 문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해석하거나 진단하였다. 3) 수퍼바이저는 나와 내 내담자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나이, 성별, 성 정체성/지향성, 결혼/동거, 출신지역,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정치적 신념, 인종/민족,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개방적이었다.
14. 종결 및 추수개입	1) 수퍼바이저는 내담자와의 상담종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나와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2) 내담자가 갑자기 상담을 중단했을 때, 수퍼바이저는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지 않았다. 3) 내담자와의 상담 종결을 수퍼비전에서 다룰 때, 수퍼바이저는 적절한 추수개입 방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4) 수퍼바이저는 미리 예고한 후 수퍼비전을 종결하였고, 필요시 다른 수퍼바이저에게 의뢰해 주었다.
15. 내담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고지	1) 수퍼바이저는 내가 학생 또는 수련생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거나 애매하게 넘겨두라고 제안하였다. 2) 수퍼바이저는 내가 수퍼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내담자에게 알리게 하였다. 3) 수퍼바이저는 내가 내담자에게 비밀보장의 한계를 알리도록 하였다.
16. 수퍼바이저 발달 모니터링†	1) 수퍼바이저는 내가 상담전문가로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확충하고 적절한 상담기술을 익힐 수 있는 상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2) 수퍼바이저는 내가 상담이외의 업무(예: 행정, 관리 업무 등)로 상담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였다. 3) 수퍼바이저가 제공하는 수퍼비전의 내용과 방식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상담기술이나 지식을 배우고, 자기 이해를 넓혀 상담전문가로서 발달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였다.
17. 수퍼바이저 훈련, 역량 개발 및 지속적 교육† †	1) 수퍼바이저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담 및 수퍼비전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잘 모르는 것 같았다. 2) 수퍼바이저는 상담, 수퍼비전 주제 및 기술과 관련한 교육활동(예: 학회, 세미나, 워크샵, 동료수퍼비전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았다. 3)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 방법 및 기술에 대한 훈련을 받지 못한 것 같았다.
18. 연구윤리† †	1) 수퍼바이저는 연구참여(또는 불참)가 수련 성적이나 수퍼비전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면서 내게 연구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2) 수퍼바이저는 연구참여에 대한 나의(내 내담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3) 수퍼바이저는 ‘연구목적과 절차, 참여에 따르는 이로운과 해로운, 절할 수 있는 권리, 비밀보장의 한계, 연구결과를 알릴 형식과 대상, 언제든 불이익 없이 철회 가능함’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내가(내 내담자가) 연구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19. 수퍼비전 비용에 대한 합의† †	1)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을 시작할 때 수퍼비전 비용, 지불방식 등에 대해 나와 의논하였다. 2) 수퍼비전 비용 및 지불방식에 변동이 있을 때, 수퍼바이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알려주었다. 3) 내 수퍼바이저는 대부분의 수퍼바이저들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높은 수퍼비전 비용을 요구하였다.